

현안분석 2006-

법령용어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소송용어 순화방안

이진국·강현철

현안분석 2006-

법령용어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소송용어 순화방안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in
Criminal Procedure Code for introduction of court
procedure in participation of nation.

연구책임자 : 이진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Lee, Jin-Kuk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ang, Hyun-Cheol

2006. 10.

연구진

공동연구책임자 : 이진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병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태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국문 요약

법률은 수범자(受範者)를 국민으로 하는 규범체계인 만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령의 준수에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규범의식을 내면화할 기회를 가질 것을 그 개념적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은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인으로서 그 규율대상 및 규율내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일본법의 계수와 이로 인한 한자어투·일본어투의 무비판적 수용, 입법자 및 법집행자들의 일반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권위주의적 용어선택, 방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입법기술상의 문제 등이 종종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과 함께 형사재판 일선에서 나타날 형사소송 관련 법령용어에 대한 순화의 요구를 고려하여,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의 법령용어를 법률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어려운 용어가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사법의 탈권위화 및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들 연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여 형사소송 관련 법령용어 순화의 전범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현행 형사소송 관련법령의 기본이 되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자 3인의 토의를 거쳐 순화의 필요성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229개의 어휘를 선정하였다. 이 용어들의 순화 또는 정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의견 및 순화안을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한 필자들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의 다년간에 걸친 연구성과는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및 같은 해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에 전향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바,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률용어 순화의 시도가 가져온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통일된 순화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의 말미에는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순화안을 조문 대비표의 형태로 만들어 붙였다. 이 순화안에는 연구에서 제안된 법령용어의 표현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국립국어원이 내놓은 ‘법령안 문장 순화 작업의 세부 지침’의 주요한 내용을 수용하여 띄어쓰기, 문장부호, 문장의 표현 등을 국어문법에 맞도록 고쳤다.

※ 키워드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용어, 국민참여재판, 법령용어, 법언어학, 법령용어순화

Abstract

This report explains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in Criminal Procedure Code for introduction of court procedure in participation of nation. In Korea, introduce bring in a legislative amendment bill of Criminal Procedure Code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a jury. Therefore, for participation in court procedure, we must be preparation for the application of a law. One of the most explains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in Criminal Procedure Code. For this service, we do to make out this report in a point of view for nations. Primary, explains more easier about difficult words from the Chinese and Japanese language. In a sentence, make correction in a mistake, an error, a fallacy. Also, compare the two the text old with new.

This report don't standardize theory about law but terminology and sentence in Korea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Criminal Procedure Code function in general law of the court procedure which have an effect all of court. But Korea Criminal Procedure Law and terminology and sentence come under the influence of Japan according as succession in Japan Law like another. For this reason, terminology and sentence in Criminal Procedure Law need to do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Therefore, This report describe about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Criminal Procedure Law. This report will suggest solutions for those parts to be purified in Korea Criminal Procedure Law : inappropriate use of terms, ungrammatical sentences, and

mistakes in word spacing. This report will serve as a useful guide for purification of the terminology and sentences in Korea Criminal Procedure Law.

※ keywords : Korea **Criminal Procedure Law**, **Criminal Procedure Code**, Terminology Purification, Sentences Purification, language and law

목 차

국문 요약	5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가】	17
【나】	61
【다】	72
【라】	85
【마】	86
【바】	95
【사】	113
【아】	145
【자】	178
【차】	203
【타】	211
【파】	215
【하】	217
▣ 부 록 :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3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법률은 수범자(受範者)를 국민으로 하는 규범체계인 만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령의 준수는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규범의식을 내면화할 기회를 가질 것을 그 개념적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은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인으로서 그 규율대상 및 규율내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일본법의 계수와 이로 인한 한자어투·일본어투의 무비판적 수용, 입법자 및 법집행자들의 일반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권위주의적 용어선택, 방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입법기술상의 문제 등이 종종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법전과 법정 안에서만 존재하는 법이 아닌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은 일반 국민에게 좀더 쉽게 이해되는 ‘쉬운 법’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범의 생활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법령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대 이후 법령용어의 순화를 위한 일련의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는 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령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수범자지향적 법이어야 한다는 법령용어의 순화에 대한 요구는 최근에 와서 단순히 ‘당위’의 차원에서 벗어나 ‘구체적 필요성’

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예컨대 2005년 대통령 산하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전신인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에 의해 권고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1년여의 연구를 통해 2005년 12월 6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521호)을 성안하여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법률안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를 위한 ‘배심원(陪審員)’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종래 법률전문가인 직업법관이 전담하던 형사재판에의 일반 국민의 참여가 제도화됨으로써, 적어도 형사소송 분야에 있어 법령용어의 순화는 이제 눈앞에 닥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과 함께 형사재판 일선에서 나타날 형사소송 관련 법령용어에 대한 순화의 요구를 고려하여,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의 법령용어를 법률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어려운 용어가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사법의 탈권위화 및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는 법령용어 순화와 관련된 입법·사법·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먼저 법령용어 순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면, 정부부처 중 법령용어 순화의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법제처는 법령용어의 순화·정비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법령용어순

화정비기준'을 제정하여 순화·정비대상 용어를 선정하고, 이를 입법·사법·행정 각 부처에 검토의뢰하여 그로부터 정비의견을 받은 후, 이를 다시 국어학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제처 내에 설치한 '법령용어심의회'에서 확정하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위의 '법령용어순화편람'을 펴내고 있다(1996년에 제6집 발행. 본문에서는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이라 함).

사법부 또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법제처의 정밀검토 요청에 따라 1995년 11월 29일 법원의 법령용어 정비 의견을 회신한 '법원행정처 법령용어 순화정비 검토의견'(본문에서는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이라 함)에서는 예시된 여러 가지 순화안을 통해 법령용어의 순화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인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법령용어 순화에 관한 법원의 의견을 좀더 자세히 읽을 수 있는 자료로는 2002 민사소송법 개정과 민사집행법 제정시 법원이 법령용어상 한자어의 순화를 위하여 만든 지침(본문에서는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라 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법원의 법령용어 순화에 대한 노력에 호응하여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법령의 제정 당시부터 순화된 법령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즉 국회는 국회의 법률안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및 심사와 의안의 정리를 위하여 국회사무처 예규로 표준화된 우리말과 한글 맞춤법에 따른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것이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2006.1.6. 국회사무처 예규 제20호(의장결재) 일부개정. 본문에서는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이라 함)이다. 이 기준에서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 한글·한자 함께 쓰기에 관한 기준, 축약된 용어 사용 금지, 같거나 비슷한 법문 표현의 표준, 법문의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 표준 등을 제시하면서 입안 단계에서부터의 법령용어의 순화와 표준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입법·사법·행정기관 외에도 정부산하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 또한 법령용어 순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국립국어원이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용어의 해설과 함께 간략하게나마 그 용어에 대한 순화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령용어가 아닌 ‘형사’관련 법령용어에 대한 시도는 역시 한국법제연구원의 주도로 진행된 일련의 법령용어순화사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03년 ‘형사법령용어의 순화와 체계적 통일화 방안 연구 :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본문에서는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라 함), 이외에도 2004년에는 ‘형사법령용어사례집(I) : 형사기본법편’ 및 ‘행형관련법령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2005년에는 ‘형사법령용어사례집(I) : 형사특별법편’ 및 ‘형사특별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법령용어의 순화정비를 위한 일련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들 연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여 형사소송관련 법령용어 순화의 전범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현행 형사소송 관련법령의 기본이 되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자 3인의 토의를 거쳐 순화의 필요성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229개의 어휘를 선정하였다. 이 용어들의 순화 또는 정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의견 및 순화안을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한 필자들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의 다년간에 걸친 연구성과는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및 같은 해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에 전향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바,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률용어 순화의 시도가 가져

은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통일된 순화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의 말미에는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순화안을 조문 대비표의 형태로 만들어 붙였다. 이 순화안에는 연구에서 제안된 법령용어의 표현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국립국어원이 내놓은 ‘법령안 문장 순화 작업의 세부 지침’의 주요한 내용을 수용하여 띄어쓰기, 문장부호, 문장의 표현 등을 국어문법에 맞도록 고쳤다.

【가】

◆ 가납(假納) → 임시납부(臨時納付), 임시로 냄

형사소송법에는 “가납(假納)”, “가유치(假留置)”, “가환부(假還付)” 등 ‘가(假)’라는 접두어가 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가(假)’는 일본어로 ‘かり’라 읽으며, ‘임시(臨時)’라는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이는 일본형사소송법의 용어들이 우리 형법에 그대로 수용된 경우이다. 참고로 우리 형사소송법 제334조는 일본형사소송법 제348조(가납부의 재판)와 동일한 규정인데, 동조는 “...검찰관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임시로(假(かり)に)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상 “가납”은 ‘임시납부’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제처의 정밀 검토 요청에 따라 법원의 법령용어 정비 의견을 회신한 ‘1995.11.29. 법원행정처 법령용어 순화정비 검토의견’(아래에서는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이라 함)도 이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권장사용’ 의견). 다만, 이 책에서는 “납부”가 축약명사형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냄’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바, ‘임시납부’ 또한 본문 등 축약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로 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임시납부)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금액을 임시로 낼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77조 (재산형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임시납부)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80조 (가납(→임시납부)집행의 조정)

제1심가납(→임시납부)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임시납부)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임시납부)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제481조 (가납(→임시납부)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임시납부)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 거주(家主) → 거주자(居住者)

“가주(家主)”는 한자어를 풀어 쓰면 ‘집주인’이라는 의미가 된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에서 ‘집주인’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것으로 ‘권장사용’ 의견이 제시된 어휘이다. 형사소송법상 이 어휘가 사용되는 곳은 단 한 곳으로, 형사소송법 제143조는 일출 전과 일몰 후에 검증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갈 때 주거의 관리자 등의 승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문의 구조상 “가주(家主)”는 ‘타인의 주거’ 진입시의 승낙주체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용어는 문언적 의미로 볼 때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에서 대체 용어로 제시된 바와 같이 ‘집의 주인’이라는 의미, 즉 집 등 주거의 소유권자라는 의미로 이해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어감을 가지지 않으면서 주거를 독점·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

여 형사소송법 제123조는 동일한 조문구조에서 “가주”라는 용어 대신 “주거주(住居主)”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03년 ‘형사법령용어의 순화와 체계적 통일화 방안 연구 :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바(아래에서는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라 함), 이 연구는 제143조의 “가주”도 이 표현으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주(住居主)”는 일본형사소송법 제114조(책임자의 입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가주”에 비해서는 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주거자(住居者)’ 또는 ‘거주자(居住者)’라고 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후자의 경우가 우리말의 쓰임상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제143조 (시각의 제한)

①일출전, 일몰후에는 거주(→거주자),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고]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거주자),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가유치(假留置) → 임시유치(臨時留置)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假)’는 일본어로 ‘임시’라는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가유치(假留置)’ 역시 일본형사소송법 제74조의 규정을 우

리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동조는 “구인장 또는 구류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임시로(假(かり)に) 가장 가까운 형사시설에 이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86조는 본문에서는 이미 ‘임시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다만 제호에서 ‘가유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호송 중의 임시유치’라는 제호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제86조 (호송중의 가유치(→임시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 가환부(假還付) → 임시반환(臨時返還), 임시로 돌려 줌

“가환부(假還付)” 역시 일본형사소송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즉 동법 제123조(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제2항은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임시로(假(かり)に) 이를 환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가(假)’는 ‘임시’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환부(還付)는 사전적으로 ‘도로 돌려줌’이라는 의미로서 ‘환급(還給)’ 또는 ‘반환(返還)’과 동일한 의미이다. 환급과 반환 중에서는 ‘반환’이 좀 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생각된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은 “가환부”를 ‘임시로 돌려 줌’이라고 표현하도록 ‘권장사용’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임시반환’이라는 표현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돌려줌’ 또는 ‘반환’이라는 용어를 일률적으로 고집하기보다는 서술형으로 사용할 때는 ‘돌려줌’이라는 표현을, 축약명사형으로 사용할 때에는 ‘반환’이라는 표현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반환·임시반환))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돌려주어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임시로 돌려줄)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임시로 돌려주어야) 한다.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반환))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돌려줄)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반환)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가환부한(→임시로 돌려준)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반환)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각호(各號)의 1 →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

일정한 일반조항을 두고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나열하는 형태의 조문구조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다. 이는 일본형사소송법의 ‘各號の一’이라는 표현(제60조, 제96조 등)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는 우리말로 ‘각 호의 (어느)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이를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라는 표현으로 순화하고 있다(제28조, 제41조, 제77조 등). 법령용어의 통일화의 관점에서 민사소송법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입법부인 국회는 국회의 법률안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및 심사와 의안의 정리를 위하여 국회사무처 예규로 표준화된 우리말과 한글 맞춤법에 따른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2006.1.6. 국회사무처 예규 제20호(의장결재) 일부개정, 아

래에서는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이라 함) 또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159조(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②다음 각호의 1(→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 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그 밖에 제102조(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제294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제416조(준항고), 제420조(재심이유) 참조.

◆ 간수(看守) → 관리(管理)

“간수(看守)”는 사전적으로 ‘물건 따위를 잘 거두어 보호하거나 보관함’이라는 의미이다. 일본어식 표현으로 우리말로의 순화가 요구된다. 1995년 형법개정시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와 제142조(공무상보관물의 무효)의 “간수”가 “관리”로 대체되었고,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한 “간수”를 “관리”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2002 민사소송법 개정과 민사집행법 제정시 법원이 한자어의 순화를 위하여 만든 지킴(아래에서는 ‘법원 한자어순화지킴’이라 함)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 또한 ‘관리’라는 표현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은 ‘지킴’이라는 표현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법령상 용어와의 통일성 및 쓰임의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관리’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119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관리자)를 붙일 수 있다.

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관리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⑤ 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의 간수(→관리)를 명할 수 있다.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관리)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그 밖에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43조(시각의 제한),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참조.

◆ 간인(間印) → 걸침도장

“간인(間印)”은 ‘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음’이라는 의미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 용어에 대하여 한자를 함께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서 일반인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권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사잇도장’, ‘거털도장’, ‘걸침도장’, ‘이음도장’ 등의 용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걸침도장’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걸침도장을 찍다’로 표현하면 될 것이다.

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결침도장을 찍은)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결침도장을 찍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③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결침도장을 찍은)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 간주(看做) → 봄

“간주(看做)”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이라는 의미이다. 특별한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가 아니므로 쉬운 우리말 ‘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형사소송법도 제 200조의5(준용규정)에서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라고 하거나 제 294조의2(피해자의 진술권)에서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이러한 견해를 입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③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본다).

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보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본다).

제61조 (우체에 부치는 송달)

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본다).

제97조 (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본다).

그 밖에 제172조(법원외의 감정),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제302조(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332조(물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등), 제480조(가납집행의 조정), 제481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참조.

◆ 개시(開始) → 시작(始作)

“개시(開始)”란 사전적으로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함’이라는 의미이다. “개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이지만, ‘시작(始作)’이라는 표현이 더 일상적이고 쉬운 용어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 한자어 순화지침은 “개시”를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실제로 이를 법률개정에 반영하였다(제21조, 제169조). 형사소송법 또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435조 (재심개시(→시작)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시작)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시작)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38조 (재심의 심판)

①재심개시(→시작)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 개요(概要) → 줄거리

“개요(概要)”는 사전적으로 ‘간결하게 추려 낸 주요 내용’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뜻이 같으면서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줄거리’로 바꾸어 쓰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2조 (청구의 방식)

①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줄거리)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 개정(開廷) → 공판(公判)을 옆

“입정(入廷)”, “재정(在廷)” 및 “퇴정(退廷)”은 한자어의 의미 그대로 ‘법정에 들어감’, ‘법정 안에 있음’ 및 ‘법정에서 나감’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단순히 한자어를 풀어쓰는 것으로 충분한 위의 예와 달리, “개정(開廷)”은 단순히 ‘법정을 연다’는 의미를 넘어 법률적으로 ‘(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하는 일’을 의미하고, “출정(出廷)”은 물리적 의미에서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입정(入廷)”과 달리 ‘(법정에 나가) 재판에 출석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입정

(入廷)”, “재정(在廷)” 및 “퇴정(退廷)”은 단순히 ‘법정에 들어감’, ‘법정 안에 있음’ 및 ‘법정에서 나감’이라고 하면 충분하겠지만, “개정(開廷)”과 “출정(出廷)”은 ‘법정을 엮’ 또는 ‘법정에 나감’이라는 표현보다는 ‘공판을 엮’ 및 ‘법정에 출석함’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위의 용어들이 축약명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므로 현재대로 쓰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자를 함께 써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은 “입정”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퇴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용어의 순화·정비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을 제정하여 순화·정비 대상 용어를 선정하고, 이를 입법·사법·행정 각 부처에 검토의뢰하여 정비의견을 받은 후, 이를 다시 국어학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제처 내에 설치한 ‘법령용어심의회’에서 확정하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 ‘법령용어순화편람’을 펴내고 있는데(1996년 제6집 발행. 아래에서는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이라 함),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입정”과 “재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견해를, “개정”과 “출정”에 대해서는 ‘재판을 엮’ 및 ‘법정(재판정)에 나옴’이라는 순화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공판을 열기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공판이 열린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8조 (재심의 심판)

③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공판을 열지) 못한다.

◆ 개폐(改廢) → 개정 · 폐지

“개폐(改廢)”는 사전적으로 ‘고치거나 없애 버림’이라는 의미로서, 한자어 ‘개정과 폐지’의 줄임말이다. 일상용어인 ‘개폐(開閉)’와의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줄여쓰지 말고 전부 써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용어를 축약하여 법문에 사용함으로써 표현이 어색하거나 원래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이를 풀어 쓰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개폐(改廢)”의 경우 ‘개정 · 폐지’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후의 법령개폐(→범죄 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갱신(更新) → 연장(延長), 변경(變更), 다시 시작

사전적 의미에서 “갱신(更新)”은 일반적으로는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이라는 의미이고 법률적으로는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갱신(更新)” 또한 ‘새롭게 고침’ 또는 ‘기간 연장’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먼저 “구속기간의 갱신”(제92조, 제105조)에서의 갱신은 구속의 ‘기간 연장’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반해 “공판절차의 갱신”(제105조, 제301조)이라고 할 때의 갱신은 ‘다시 시작함’을 의미하고, “갱신 결정”(제408조)에서의 갱신은 ‘변경’을 의미한다. 구속기간의 갱신에 있어서는 “갱신”은 ‘연장’으로 바꾸어도 용어의 사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기 쉽다. 본문 이외에 제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공판절차의 갱신에 있어서 “갱신”은 본문에서는 ‘다시 시작’이라고 바꾸어도 무방하지만 제호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어색하다. 따라서 이 경우 제호에서는 “갱신”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 결정)의 경우에는 제호의 “갱신”은 ‘변경’으로 바꾸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또한 이렇게 바꾸는 경우 본문의 “경정” 또한 ‘변경’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용어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적절하다 할 것이다.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연장))

- ①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연장)할 수 있다.
- ②갱신(→연장)한 기간도 2월로 한다.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연장),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변경) 결정)

- ①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변경)하여야 한다.

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1조의2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거소(居所) → 현재대로

“거소(居所)”는 사전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용어가 법률용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사람이 다소의 기간 동안 계속 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법률이 이러한 장소와의 밀접성을 기준으로 “주소(住所)”와 “거소(居所)” 및 “현재지(現在地)”로 나누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용어는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 또한 이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제 4 조 (토지관할)

-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 ③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 건錠(鍵錠) → 잠금장치

이 용어는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말이다. 한자의 뜻으로 보면 “건(鍵)”은 자물쇠를, “錠(錠)”은 덩어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를 ‘자물쇠’로 바꾸어 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취지로 보아 자물쇠 이외에도 널리 잠그는 장치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잠금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錠을(→잠금장치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계기(偈記) → 규정(規定), 적음

“계기(偈記)”는 사전적으로 ‘기록하여 내어 붙이거나 걸어 두어서 여러 사람이 보게 함 또는 그런 기록’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로 한자를 함께 쓰지 않는 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이 표현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에 계기한’ 등의 표현을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제314조, 제322조 등) 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한)’(제324조, 제334조, 제457조 등)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이를 ‘규정’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은 이를 단순히 ‘적어 넣음’ 또는 ‘기재함’ 등의 표현과 병행하여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소송 관련법령상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곳은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와 형사소송규칙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두 곳이다.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계기한”은 ‘적은’이나 ‘규정한’ 중 어느 쪽을 써도 무방하고, 아예 빼버리더라도 문맥의 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규칙 제93조의 “계기한”은 문맥의 흐름상 ‘규정한’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적은’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써야 할 것이다.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계기한(→규정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영장청구의 방식)

②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계기한(→적은) 서면1통(수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 게시장(揭示場) → 게시판(揭示板)

“게시장(揭示場)”은 사전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알릴 내용을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볼 수 있게 한 곳’이라는 의미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를 ‘알림판’으로 순화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게시판’이라는 표현이 훨씬 친숙하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②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법원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 경과(經過) → 과정(過程), 지남

“경과(經過)”는 일반적으로 ‘일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와 ‘시간이 지나감’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형사소송법상 “경과”는 제171조(감정보고),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제313조(진술서등)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후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양자는 굳이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체할 쉬운 표현이 있고, 한글뿐 아니라 한자의 표기도 같아서 혼동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순화를 필요로 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과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전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후자의 경우를 ‘지남’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적절한 견해로 생각된다. 전자의 경우, 즉 ‘일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의 “경과”는 쉬운 표현인 ‘과정’으로 순화하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171조 (감정보고)

①감정의 경과와(→과정과)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과정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 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13조 (진술서등)

②감정의 경과와(→과정과)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5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0조 (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 밖에 제114조 (영장의 방식),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457조(약식 명령의 효력), 제471조(동전) 참조.

◆ 경유(經由) → 거침

“경유(經由)”는 물리적으로 ‘어떤 곳을 거쳐 지남’이라는 의미를 갖고, 사무절차 등의 관념적 의미에서는 ‘어떤 부서를 거쳐 지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상 “경유”는 예외 없이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쉬운 우리말인 ‘거침’으로 순화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및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도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제260조 (재정신청)

②전항의 신청은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거쳐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49조 (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②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63조 (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검사를 경유하여야(→거쳐야) 한다.

◆ 경정(更正) → 변경(變更)

“경정(更正)”은 사전적으로 ‘바르게 고침’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상의 쓰임을 보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및 ‘재판서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결정 또는 재판서를

알맞은 내용으로 고치거나 변경한다는 의미로 사용될 뿐 그 자체가 전문법률용어로 사용되어야 할 만큼의 함축성을 가진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굳이 어려운 한자어인 “경정”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변경(變更)’이라는 표현을,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고침’이라는 표현을 순화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특히 ‘경정결정을 하다’라는 표현을 ‘바로잡다’라고 순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미상으로는 같은 뜻일지 모르나 “경정결정”이라는 정형화된 법률상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경정”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두기도 하고(제260조, 제446조) 한자를 함께 쓰기도 하는 등(제94조, 제211조)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정결정”이라는 용어의 조어력(造語力)을 고려할 때 ‘변경’이라는 용어로 순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때 제408조 제호의 “갱신결정”이라는 표현 또한 ‘변경결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변경)결정)

①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변경)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재판서의 결정)

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변경)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변경)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변경)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질(更迭) → 바뀜

“경질(更迭)”은 사전적으로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뀜’이라는 의미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갈림’이라는 용어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에서의 쓰임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단순히 ‘바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와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종전의 “경질”을 ‘바뀜’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제204조).

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판사가 바뀐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경합(競合) → 현재대로

“경합(競合)”은 법률상 일반적으로 ‘단일한 사실 또는 요건에 대한 평가나 평가의 효력이 중복되는 일’을 의미한다. 특히 형법에서는 ‘동일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법률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전문법률용어로 정착된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 또한 이를 현재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3조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336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①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계속(係屬) → 한자 함께 씀

“계속(係屬)”은 민사소송법적으로는 ‘소(訴)의 제기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특정 사건이 판결 절차에서 심판되고 있는 상태’를, 형사소송법적으로는 ‘형사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는 ‘계속(繫屬)’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전문법률 용어로서 이를 대체할 용어가 적당치 않다. 따라서 이 용어는 현행대로 사용하도록 하되, 무엇인가가 진행 중에 있다는 의미의 ‘계속(繼續)’과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자를 함께 써 주면 좋을 것으로 본다.

제 6 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제13조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서류, 증거물의 열람등본)

변호인은 소송계속(係屬)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다.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係屬)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고지(告知) → 알림, 통지(通知)

“고지(告知)”는 사전적으로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이라는 의미이다.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송법적으로 ‘법원이 결정사항이나 명령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 맞게 법원의 판결·결정이나 명령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검사가 피의자·피고인, 고소·고발인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말함’(제72조, 제201조의2), ‘알림’(제87조, 제88조, 제200조), ‘통지’(제258조), ‘설명’(제259조) 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이러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법원이 피고인에게 판결·결정 또는 명령이 아닌 증거거부권의 존재를 알려주는 경우에도 본문에서는 “설명하여야”라고 하면서 제호에서는 “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제160조), 또한 검사가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본문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제호에는 “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제72조, 제88조, 제200조, 제258조, 제259조). 결국 이러한 용어사용의 혼란은 “고지”라는 용어가 법원이 판결·결정이나 명령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전문법률용어라고 하여야 할 당위성의 근거가 상실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좀 더 쉽고 일상적인 용어로 순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 및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권장사용’ 의견)은 모두 이를 ‘알림’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나머지도 이와 같이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제호에서 또는 한자어와 나란히 사용되는 경우 ‘알림’

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알린다’는 의미의 함축적 조어가 필요한데, 어떠한 용어가 적절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취지의 용어로는 “고지”와 “통지”가 섞여 쓰이고 있다. 이 가운데서는 “통지”가 훨씬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용어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알림’으로 바꾸되 축약명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통지(通知)’로 바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통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통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통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통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알려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알려야) 한다.

제416조 (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통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통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제43조(동전), 제44조(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참조.

◆ 고(告)하다 → 알리다

“고(告)하다” 것은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말하다’ 또는 ‘중요한 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알리다’라는 의미이다. 한자의 음과 훈은 ‘고할 고’로서 ‘알리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알리다’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 또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

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제287조 (피고인신문의 방식)

③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 공(供)하다 → 사용(使用)하다

“공(供)하다”는 ‘바치다’, ‘내놓다’ 또는 ‘도움이 되게 하다’는 의미의 일본어 ‘供する’에서 비롯된 말이다. 일본형사소송법은 제212조(현행 범인)에서 “장물 또는 명백히 범죄의 용도에 공하여졌다(供した)고 생각되는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자의 의미나 동조에서의 쓰임을 볼 때 이는 일반적으로 ‘제공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나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를 보면, 동조에서 이러한 표현이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증거에 공할 압수물”, “증거에만 공할 목적”이라는 문언에서 “공(供)할”은 ‘제공할’의 의미라기보다는 ‘사용할’이라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용어의 본래의 의미는 아니지만 동조의 “공(供)할”은 ‘사용할’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사용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 ② 증거에만 공할(→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공과(公課) → 공과금(公課金)

“공과(公課)”는 사전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상의 부담이나 육체적인 일’을 의미한다. 즉 ‘공적 부과(公的 賦課)’의 줄임말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공과금’이라는 표현으로,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공적 부과’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미상으로는 ‘공적 부과’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경우인 제478조에서는 벌금 또는 추징만이 문제될 뿐이므로 ‘공과금’이라는 좀 더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공과금)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공동(共同)하여 → 공동(共同)으로

이 말은 같은 뜻의 일본어 ‘共同して’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말의 쓰임에 맞게 ‘공동으로’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써야 할 것이다.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②여럿이 공동하여(→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 공매(公賣) → 현재대로

“공매(公賣)”는 사전적으로 ‘관공서에서 물건을 팔’이라는 의미이다. 법률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매각’ 등의 단어로는 그 규범적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는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②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

③전항의 기간내에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공무소(公務所) → 관공서(官公署)

“공무소(公務所)”는 사전적으로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곳’을 의미한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일상적인 용어라고는 볼 수 없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를 ‘공공기관’으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공공기관’ 외에 ‘관공서’ 또는 ‘관계기관’을 선택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공무소”를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제21조, 제191조, 제294조 등).

먼저 ‘공공(公共)’은 사전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이러한 성격의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곳’만을 의미하는 “공무소”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상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와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에서는 “관공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표현이 용어의 취지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용어

라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이 제시하고 있는 선택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소속 관공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1조 (공무상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소속 관공서)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소속 관공서) 또는 당해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소속 관공서)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공무소(→관공서),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7조 (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소속 관공서)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공무소(→소속 관공서)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79조의2 (감정의 촉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관공서)·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관공서)·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관공서)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2조 (공무소(→관공서)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관공서)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485조 (위조등의 표시)

②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관공서)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관공서)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 공시(公示) → 현재대로

“공시(公示)”는 사전적으로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공공기관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따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을 의미한다. 한자를 풀어 보면 그 뜻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우리말만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를 ‘널리 알림’으로 순화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알림’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용어로서의 “공시”는 “-송달(送達)” 및 “판결(判決)-” 등의 용어와 결합하여 “공시송달(公示送達)”, “판결공시(判決公示)” 등의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공시”는 ‘(널리) 알린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일정한 내용을 법률이 요구하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알린다’는 의미를 갖는 전문법률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알린다’는 용어는 “공시”의 의미내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용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공시”는 전문법률용어로서의 기능을 인정하여 그냥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제150조, 제194조 이하, 제217조, 제256조 등).

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②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계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43조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 공중(公衆) → 일반인(一般人)

“공중(公衆)”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 또한 아니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은 이를 ‘일반인’으로 순화할 것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 또는 ‘일반인’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인’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내에 한한다.

◆ 관하(管下) → 관할구역(管轄區域) 안에 있는

“관하(管下)”는 사전적으로 ‘관할하는 구역이나 범위’라는 의미이다.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이므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순히 ‘관할하는’ 정도로 바꾸어도 문제는 없겠지만, 이 말은 앞에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어감이 든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다른 조문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제3조, 제8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 제136조 등) ‘관할구역 안의’ 정도의 표현으로 바꾸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관하(→관할구역 안에 있는)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 교부(交付) → 내줌, 교부(交付)

“교부(交付)”는 사전적으로 ‘내어 줌’이라는 의미이고, 법률적으로는 ‘물건을 인도하는 일’을 말한다. 양자 모두 무엇인가를 ‘내준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같다. 일반용어로서의 의미와 법률용어로서의 의미가 특별히 다르지 않고, “교부”라는 표현만이 가지는 특별한 개념요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일상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순화안으로 ‘내주다’ 또는 ‘넘겨받다’를 제시하고 있고,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도 ‘내주다’라는 표현을 제안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교부”는 ‘내주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더라도 대부분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제호 등에서 축약명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내줌’ 등으로 표기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이를 대체할 적합한 용어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교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또한 똑같이 “교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준다’는 용어보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의 경우에는 제호의 표현과 같이 본문에서도 단순히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고,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와 제484조(몰수물의 교부)에 있어서 “교부”는 실질적으로 ‘반환’ 또는 ‘돌려줌’이라는 의미이므로 그러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본다.

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

할 수 있다).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내줄) 수 있다.

제128조 (증명서의 교부(→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내주어야) 한다.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내주어야) 한다.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내줄) 수 있다.

제200조의2 (체포)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내준다).

제201조 (구속)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내준다).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반환))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돌려주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4조 (몰수물의 교부(→반환))

- ① 몰수를 집행한 후 3월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몰수물을 돌려줄 것을)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돌려주어야) 한다.
- ② 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돌려주어야) 한다.

◆ 구술(口述) → 말

“구술(口述)”은 사전적으로 ‘(입으로) 말함’이라는 의미이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은 ‘말로 진술’을,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를 ‘말로 함’을,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말로 진술’ 또는 ‘말로 함’을 동시에 제안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를 모두 ‘말로’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다(제89조, 제161조, 제266조 등). 법령용어 통일화의 관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용어 또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말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5조 (공소의 취소)

- ②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말로) 할 수 있다.

제352조 (상소포기등의 방식)

- ①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

로써(→말로) 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말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근친자(近親者) → 친족(親族) 등

“근친자(近親者)”는 사전적으로 ‘촌수가 가까운 일가가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근친(近親)’이라는 용어는 ‘근친상간(近親相姦)’ 등의 표현 외에는 일상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쓸 필요가 있다. 조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친족(親族)’이라는 표현을 써서 ‘친족 등’ 정도로 표현하면 무난할 것으로 본다.

제148조 (근친자(→친족 등)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 기(基)하다 → 터잡다

“기(基)하다”는 말은 ‘근거하다’ 또는 ‘입각하다’는 의미의 일본어 ‘基づく’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문에 나타나는 “기(基)하여”는 “基づいて”를 직역한 말로 한자어로는 ‘근거하여’, ‘입각하여’, ‘의하여’ 등으로, 순우리말로 ‘따라’, ‘터잡아’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모두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순화된 용어만 사용’ 의

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순화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용어는 다르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은 ‘터잡아’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의하여’, ‘따라’, ‘바탕으로 하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근거하다’ 또는 ‘터잡다’가 용어의 뜻을 정확히 고려하는 순화방향이라고 보여지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말 ‘터잡아’가 더욱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제201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⑦지방법원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구속영장청구에 기하여(→터잡아)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기립(起立) → 일어섬

“기립(起立)”은 ‘일어나서 섬’을 한자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말 ‘일어서다’로 바꾸면 충분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도 같은 견해이다.

제157조 (선서의 방식)

④선서는 기립하여(→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

◆ 기망(欺罔) → 속임(수)

“기망(欺罔)”은 ‘속이다’라는 뜻으로서 ‘기만(欺瞞)’과 같은 의미이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법령은 헌법, 법률 13건, 시행령 1건, 시행규칙 1건 등 16건에 불과하고, 각 법령 내에서의 사용빈도 또한 헌법 1개 조문, 형법 2개 조문, 형사소송법 1개 조문 등으로 매우 낮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기망”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전문법률용어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이 단어가 일상용어인 ‘속이다’라는 의미 외에 다른 규범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

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쉬운 일상용어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이에 대해 한자를 함께 쓰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글이나 한자나 그 자체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쉬운 우리말인 ‘속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기망”은 일정한 행위태양을 의미하므로 ‘속임’보다는 ‘속임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본다.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속임수)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기재(記載) → 적음

“기재(記載)”는 사전적으로 ‘문서 따위에 기록하여 올림’이라는 의미이다.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일뿐더러, 법률용어로서의 특별한 규범적 의미를 갖는 용어도 아니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및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적다’, ‘적어 넣다’, ‘쓰다’, ‘써넣다’ 등의 용어를 순화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적다’ 정도로 충분할 것이다. 다만, 축약명사형으로 사용할 때는 ‘적음’으로 하는 것은 어색하므로 현재대로 “기재”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재판서에 적어야 할 요건))

- ①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적어야) 한다.
- ②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적어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공판에 참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적어야) 한다.

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적어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적힌)내용의 정확 여부를 물어야 한다.
- 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적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적어야) 한다.
-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적게) 할 수 있다.
-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적어야) 한다.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적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주거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밖에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제44조(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

의 청구),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제49조(검증등의 조서),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제57조(공무원의 서류), 제58조(공무원의 서류),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제76조(소환장의 송달),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제114조(영장의 방식), 제157조(선서의 방식), 제170조(선서),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200조의2 (체포), 제200조의3 (긴급체포), 제201조(구속), 제201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55조(공소의 취소), 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제302조(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제313조(진술서등),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52조(상소포기등의 방식), 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제461조(집행지휘의 방식),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참조.

◆ 기타(其他) → …등(等), 그 밖의(에)

“기타(其他)”는 한자를 풀어 쓰면 ‘그 밖의 또 다른 것’이라는 의미이다.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 표현이 있으면 그렇게 순화하여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및 국립국어연구원이 제정한 ‘법령안 문장 순화 작업의 세부 지침’(아래에서는 ‘국어연구원 법령안순화세부지침’이라 함)은 모두 ‘그 밖의(에)’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전면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수용하고 있다. 법령용어의 순화 및 통일

화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과 같이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의 “기타”의 쓰임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한 후 그 이외의 것들을 총칭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그 밖의(에)’보다는 오히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등(等)’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 가지 용어에 집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어울리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그 밖의’와 ‘그 밖에’의 쓰임의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에 나열된 내용이 그 밖의 것을 예시하는 것인 경우, 즉 앞의 것이 뒤의 것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를 사용하고, 앞에 나열된 내용이 뒤의 것과 병렬적인 관계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 밖에’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그 밖의)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그 밖에)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4. 판결 기타의(→등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⑤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등)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⑩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등)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계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등)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등)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그 밖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그 밖에 제41조(재판서의 서명등),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91조(비보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제99조(보석의 조건),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02조(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제109조(수색), 제114조(영장의 방식),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제165조(증인의 법정외신문), 제172조(법원외의 감정),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제198조(주의사항),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번호사),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6조(전문의 진술),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동전),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참조.

◆ 긴급(급속)을 요하는 경우 →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급속(急速)을 요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일본형사소송법상의 ‘急速を要する場合’이라는 표현을 직역한 것이다(제69조, 제70조, 제92조, 제127조 등 참조).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표현도 “급속”을 “긴급”으로 바꾸었을 뿐 같은 구조의 말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말의 쓰임에 맞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도의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 3 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행)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0조 (요급(→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

여(→긴급한 사정으로)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긴급한 사정이라)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그 밖에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97조(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220조(요급처분),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참조.

【나】

◆ 난외기재(欄外記載) → 칸 밖에 적음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공란(空欄)’을 ‘빈 칸’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란(欄)’을 ‘칸’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외(外)’는 ‘바깥’ 또는 ‘밖’으로, ‘기재(記載)’는 ‘적음’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난외기재”는 ‘칸 밖에 적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이다.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칸 밖에 적는 경우)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날인(捺印) → 도장을 찍음

형사소송법상 “날인(捺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날인”은 ‘도장을 찍음’이라는 의미인데, 일상적으로 잘 사용되는 말도 아니고 한자도 어려운 한자여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과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도장을 찍음’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날인”이라는 용어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명날인(署名捺印)”, “기명날인(記名捺印)”, “연명날인(連名捺印)” 등 일련의 행위를 한데 묶어 축약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명(署名)”은 ‘자기의 이름을 써넣음’이라는 뜻이고 “기명(記名)”은 ‘이름을 적음’이라는 뜻이다. 양자는 모두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이지만, “서명”은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 때 이를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 등으로 풀어 쓸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보여진다. 일단 한글로 쓰게 되면 한자어 “서명”과 “기명”이 갖는 강렬한 대비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조문에 따라 서명날인과 기명날인이 수 차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한글로 풀어쓰면 언어사용의 경제성에 어긋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41조 제2항의 경우 이를 한글화하면 ‘재판장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을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다른 법관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을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현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명날인”과 “기명날인”은 나름대로 법률용어로서의 규범성을 획득한 용어로서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대신 형사소송법상 단 한 번 사용되고 있는 “연명날인”이나(제32조 제1항),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는 “날인”(제313조, 제461조)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함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 및 ‘도장을 찍음’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함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② 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도장을 찍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제313조 (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서명이 있거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

로(→도장을 찍어) 할 수 있다.

그 밖에 제41조(재판서의 서명등),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제57조(공무원의 서류),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제114조(영장의 방식), 제157조(선서의 방식), 제200조의2(체포), 제201조(구속),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참조.

◆ 납부(納付) → 냄

“납부(納付)”는 사전적으로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냄’이라는 의미이다.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용어이지만, 법률용어 순화의 관점에서 같은 뜻을 표현하는 우리말 ‘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법원 한자어 순화지침 및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 또한 이러한 취지로 제안하고 있다. 다만, 제호 등과 같이 축약명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냄’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납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납입(納入) → 냄

“납입(納入)” 또한 사전적으로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것’의 의미로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납부’ 또는 ‘냄’ 등으로 순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납부”와 같이 ‘냄’으로 순

화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내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 (보석과 보증금)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산정도로는 납입하기 불가능한(→낼 수 없는) 보증금액을 정할 수 없다.

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

- ①보석의 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낸)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다.
- ②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이외의 사람이 보증금을 내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낼)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④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⑥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14조의4 (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 낭독(朗讀) → 읽음

“낭독(朗讀)”은 ‘글을 소리내어 읽음’이라는 의미이다. 법원 한자어 순화지침은 이를 ‘소리내어 읽음’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단순히 ‘읽음’으로 고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읽음’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고 있다(제146조, 제191조 등). 형사소송 관련법령에도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조문이 있다.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는 제3항에서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라고 규정하여 ‘읽어 준다’는 표현을,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는 제2항에서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읽어서 들려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형사소송 규칙 제35조(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낭독청구) 또한 제호에서는 “낭독”이라고 하면서 본문에서는 ‘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낭독”은 사전적으로 ‘소리내어 읽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만, 형사소송 관련법령상 “낭독”은 모두 소리내어 읽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로서 굳이 ‘소리내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과의 법령용어 통일화의 관점 등을 고

려할 때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와 같이 축약명사형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읽음’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43조 (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낭독)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공판조서를 읽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7조 (선서의 방식)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읽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읽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제292조 (증거조사의 방식)

②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읽게) 할 수 있다.

◆ 내(內) → 안

“내(內)”는 물리적 공간의 개념으로서나 시간적 기간의 개념으로서나 모두 ‘안’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고 어감도 자연스럽다. 따라서 우리말인 ‘안’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제 4 조 (토지관할)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안)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
한 곳 이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안)에서 범한 죄에 관하
여 준용한다.

제 8 조 (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안)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
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
에 이송할 수 있다.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안)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
다.<개정 1995.12.29>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이내(→안)에 검사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 밖에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제71조(구인의 효력), 제77조(구속의
촉탁),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제97조(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제104조(보증금의 환부),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37조(구속영장집
행과 수색), 제143조(시각의 제한),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제167조(수명
법관, 수탁판사),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200조의2 (체포) 등 참조.

◆ 녹음대(錄音帶) → 녹음테이프

“녹음대(錄音帶)”는 국어사전에 실려있지 않은 단어이다. 풀어 쓰면

‘소리(音)를 기록하는 띠(帶)’라는 의미가 된다. 이는 곧 ‘녹음테이프’를 의미하는 말이다. ‘테이프’는 외래어지만 이미 우리말로 정착되어 있고, 이를 대체할 용어도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그대로 ‘녹음테이프’라고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③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대(→녹음테이프)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37조 (녹취)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 기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9조 (녹음대(→녹음테이프)의 폐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 또는 제3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녹음대(→녹음테이프)를 폐기한다.

◆ 녹취(錄取) → 녹음(錄音)

“녹취(錄取)”는 사전적으로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고 채취함’이라는 뜻을 갖는다. 즉 일정한 음향을 ‘녹음(錄音)’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는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제56조의2 제1항)에 의해 명백해진다. 따라서 이는 쉽고 일상적인 ‘녹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의 견해도 같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녹음))

- ①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녹음)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녹음)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녹음을)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속기나 녹취(→녹음)의 신청)

- ①속기나 녹취(→녹음)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②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취를(→녹음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7조 (녹취(→녹음))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녹음)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기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8조 (녹취서(→녹음서)의 작성등)

- ①재판장은 제37조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취서(→녹음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녹음서)가 작성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한다.
 1. 녹취서(→녹음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서(→녹음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녹음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농아자(聾啞者) → 듣고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

한자의 음과 훈으로 볼 때 ‘농(聾)’은 ‘귀먹을 농’ ‘아(啞)’는 ‘병어리 아’이다. 따라서 “농아자”는 ‘귀머거리인 동시에 병어리인 사람’을 말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농자(聾者)’를 ‘듣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아자(啞者)’는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 바꾸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농아자(聾啞者)’는 ‘듣고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81조의 경우에는 제호에서는 “농아자”라고 하면서 본문에서는 “농자 또는 아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장애인의 통역을 위한 조문임을 고려할 때 본문의 표현대로 선택관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형법상 책임능력 감경사유인 제11조(농아자)와 관련하여 농아자라 하여 모두 사물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시각장애인 등과의 관계에 있어 형평의 문제가 있으며, 우리 형법이 본받았던 일본형법의 같은 규정도 1995년 형법개정시 삭제되었고,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에서도 이를 삭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81조의 농아자에 대한 특별규정은 소송절차상의 편의도모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제33조의 경우 최근 학계와 실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필요적 국선번호 범위의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제33조 (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듣고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제181조 (농아자(→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다】

◆ 단행(但行) → 단서(但書)

“단행(但行)”은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단어로서, 형사소송법에서는 ‘단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쉬운 표현인 ‘단서(但書)’라고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② 전항 단행(→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제447조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단서)의 규정에 의한 판결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 당부(當否) → 옳고 그름

“당부(當否)”는 ‘옳고 그름, 마땅함과 그렇지 않음, 적당함과 부적당함’ 등의 의미를 갖는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쉬운 우리말로 ‘옳고 그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260조 (재정신청)

①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당해(當該) → 그, 해당(該當)

“당해(當該)”는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문투의 구시대적 용어로서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및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그’라는 표현으로,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해당(該當)’이라는 표현으로, 국어연구원 법령안순화세부지침은 양자 중 어느 하나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그’라는 표현(제44조, 제167조, 제306조)과 ‘해당’이라는 표현(제177조, 제356조)을 문맥에 따라 섞어 사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당해”도 이같이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

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해당)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해당)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해당)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9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102조 (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①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 취소하지 못한다.

- 4. 피해자, 당해(→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111조 (공무상비밀과 압수)

-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해당)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해당)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 밖에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번호사), 제294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제338조(상소권자) 참조.

◆ 대서(代書) → 대신 씀

“대서(代書)”는 ‘남을 대신하여 관청 행정이나 법률 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 또는 단순히 ‘대신 씀’의 의미이다. 형사소송법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의 “대서업자”에서의 “대서”는 전자의 의미이지만, 형사소송법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형사소송규칙 제41조(서명날인의 특칙)에서의 “대서”는 후자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모두 ‘대신 씀’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의 의견은 ‘정비된 용어만 사용’ 의견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전문법률용어로 현행대로 두고, 후자의 경우에만 ‘대신 씀’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44조에서는 앞의 “작성”을 받으므로 ‘대신 작성하게’로, 형사소송규칙 제41조에서는 앞의 “서명”을 받으므로 ‘대신 서명하게’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112조 (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대신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41조 (서명날인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불능인 때에는 타인이 대서한다(→대신 서명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대신 서명한)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대등(對等)하며 → 같은 구조로 하며

“대등(對等)”은 ‘서로 견주어 높고 낮음이나 낮고 못함이 없이 비슷함’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내용상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이 “대등”하다는 말은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이 같은 수준과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서로 같음’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자고 하고 있으나, ‘같다’는 표현으로는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제275조에서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에 좌석한다”를 ‘정면에 앉는다’는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등하며”는 ‘같은 구조로 하며’ 정도로 바꾸어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③검사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대등하며(→같은 구조로 하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에 좌석한다.

◆ 대행(代行) → 대신(代身)

“대행(代行)”은 ‘남을 대신하여 행함’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 제157조에서 서기관 또는 서기가 “대행”하는 것은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대신’한다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제157조 (선서의 방식)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대신)한다.

◆ 도과(徒過) → 지남

“도과(徒過)”는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단어로, 한자의 뜻을 풀어 쓰면 ‘헛되이 지나다’라는 의미이다. 일상생활에서 전혀 쓰이지 않는 말로 쉬운 말로의 순화가 필요하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은 순화안으로 ‘지남’이라는 용어를,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넘김’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지남’, ‘지나감’, ‘경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쓰임을 고려할 때 ‘지남’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②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지나기) 전에 피고인으로 부터 법 제3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도화(圖畵) → 그림

“도화(圖畵)”는 사전적으로 ‘도안과 그림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라는 의미이다. 한자를 함께 쓰지 않고는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비일상적인 용어이다. ‘도안’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림’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그림’으로 순화하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제49조 (검증등의 조서)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그림이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 독립(獨立)하여 → 독립적으로

“독립(獨立)하여”는 일본형사소송법상의 ‘獨立して’를 직역한 표현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쓰임에 어울리게 ‘독립적으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따로 떼어’라는 순화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의 쓰임에는 적합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제29조 (보조인)

③보조인은 독립하여(→독립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¹⁾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독립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독립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제226조 (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제338조 (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1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와 당해 다른 사건의 검사는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독립적으로) 상소할 수 있다.

◆ 동일(同一)한 → 같은

“동일(同一)”은 ‘어떤 것과 비교하여 똑같음’이라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도 일상적인 용어이다. 그러나 쉽게 바꾸어 쓸 수 있는 우리말 표현 ‘같음’이 있으므로 그렇게 바꾸어 쓰면 좋을 것이다. 법원 한자

1) 동조는 2005.3.31. 개정에 의해 “호주”가 삭제되었다. 시행일은 2008.1.1.이다.

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은 ‘같음’이라고 바꾸면 어색하므로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 7 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같은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제12조 (동일사건(→같은 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같은) 효력이 있다.

⑤피고인이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같은) 효력이 있다.

그 밖에 제13조(관할의 경합),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200조의2(체포),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1조(구속), 제

208조(재구속의 제한),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294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참조.

◆ 동전(同前) → 앞과 같음

법령의 제호에 나오는 “동전(同前)”은 ‘앞에 나오는 조문의 제목과 동일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아래에 든 제43조, 제226조, 제227조 외에도 제217조, 제291조, 제341조, 제381조, 제417조, 제421조, 제434조, 제471조 등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조문의 제목 단위로 관련 있는 내용들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 제목의 중복을 없애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통폐합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므로, 그 전까지는 이를 우리말로 풀어 써서 ‘앞과 같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취지이다.

제43조 (동전(→앞과 같음))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26조 (동전(→앞과 같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 (동전(→앞과 같음))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 등본(謄本) → 한자 함께 씀

“등본(謄本)”은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 또는 그런 서류’를 의미한다. 오랫동안 전문법률용어로 사용되어 오면서 앞의 사전적 의미에 ‘관공서에서 부여한 증명기능을 포함한 서류 또는 문서’라는 규범적 의미까지 획득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 법률용어표준화 기준은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본(謄本) 등으로 오해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한자를 함께 표기하여 “등본(謄本)”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베낀 책이나 문서’라는 의미의 “초본(抄本)”,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최초로 작성한 서류’를 의미하는 “원본(原本)”, ‘원본의 훼손에 대비하여 예비로 보관하거나 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드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의미하는 “부분(副本)” 또한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35조 (서류, 증거물의 열람등본(謄本))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謄本)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謄本)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謄本)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461조(집행지휘의 방식),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참조.

◆ 등사(謄寫) → 복사(複寫)

“등사(謄寫)”의 사전적 의미는 ‘등초(謄抄)’, 즉 ‘원본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 베껴’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등사”를 한다고 하는 경우, 이는 같은 글이나 그림을 많이 찍어 낼 때에 등사 원지를 출판 위에 놓고 필요한 글이나 그림을 첩필로 긁거나 그런 다음 이것을 틀에 끼워 그 위를 등사 잉크를 바른 롤러로 밀어서 찍어내는 것, 즉 ‘등사기로 찍음’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인쇄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전에 “등사”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던 문서 등의 복본(複本)의 제작은 이제 ‘복사(複寫)’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복사’의 사전적 의미 또한 ‘사진·문서 따위를 본디 것과 똑같이 박는 것’으로서 “등사”와 실질적 의미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법문상의 “등사” 또한 현대감각에 맞게 ‘복사’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 또한 이러한 취지로 제안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같이 바꾸어 쓰고 있다(제162조, 제163조).

제35조 (서류, 증거물의 열람등본)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복사)할 수 있다.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복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5조 (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복사)할 수 있다.

제292조 (증거조사의 방식)

②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복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23조 (변호인의 서류등 열람, 등사(→복사))

① 변호인은 자기의 사무원 기타 사용인으로 하여금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이하 이 조에서는 “서류등”이라 한다)을 열람 또는 등사(→복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서류등을 등사(→복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필기도구는 연필에 한한다.

③ 재판장은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변호인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무원 기타 사용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등사(→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라】

◆ 로부터 → 부터

국어사전에 의하면 ‘-부터’라는 말은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로부터’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이에 따를 때 어떤 기간의 시작점으로서의 ‘날(日)’과 결합하는 표현으로는 ‘날로부터’와 ‘날부터’가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지만, ‘때’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때부터’가 정확한 표현이다. 형사소송법은 양자를 혼용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로부터’라 하고 어느 경우에는 ‘-부터’라고 하는 것도 불규칙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특히 이 책에서는 “내지(乃至)”를 ‘-부터 -까지’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바, 이러한 표현과의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로부터”는 ‘-부터’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때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그 밖에 “-날로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조문으로는 제104조(보증금의 환부), 제230조(고소기간),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260조(재정신청),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 결정),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제416조(준항고),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를, “-때로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참조.

【마】

◆ 만료(滿了) → 끝남

“만료(滿了)”는 ‘기한이 다 차서 끝남’이라는 의미이다. 쉬운 우리말 ‘끝남’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도 아무런 뜻의 변화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같이 바꾸어 쓰고 있다(제421조).

제172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끝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규칙 제56조 (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끝난) 때에는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9 (영장발부와 통지)

①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2.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거나 구속후 구속기간이 만료하여(→끝나)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98조 (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구속기간이 끝난)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 말일(末日) → 마지막 날

“말일(末日)”은 한자어의 뜻 그대로 ‘어떤 시기나 기간의 맨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끝나는 날’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우리말 ‘마지막 날’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제66조 (기간의 계산)

③기간의 말일(→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 면전(面前) → 앞

“면전(面前)”은 사전적으로 ‘보고 있는 앞’을 의미한다. 법원 한자어 순화지침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일상적이고 쉬운 용어인 ‘앞’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같이 바꾸어 쓰고 있다(제161조).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①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형사소송규칙 제130조 (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면전(→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76조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앞)에서 하여야 한다.

◆ 멸실(滅失) → 현재대로

“멸실(滅失)”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없어짐’을 의미하지만, 법률상 “멸실”은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전문법률용어이다. 이 용어의 순화와 관련하여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모두 이를 '없어짐'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도 이를 '없어짐'으로 바꾸고 있다. 다만,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은 양자의 '병행사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멸실"이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물건이 "멸실"되는 것은 그것이 재난 등에 의해 심하게 파손 또는 훼손되어 그 가치가 소멸하여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분실 또는 처분에 의해 없어지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없어짐'으로 대체하는 것은 "멸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32조에서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 경우로 들고 있는 '멸실우려'를 단순히 '없어질 우려'로 바꾸는 경우, 그 '없어지는' 이유의 제한이 법문상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가치의 소멸 이외에도 난 또는 처분에 의해 없어지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 및 법문상 "파손" 및 "부패" 등 용어사용과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문법률용어로서 "멸실"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명(命)하다 → 명령(命令)하다

"명(命)하다"는 표현은 '명령한다'는 뜻의 일본어 '命する'를 직역한 것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명(命)할 수 있다'를 '명령할 수

있다'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①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밖에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제106조(압수),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제115조(영장의 집행),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44조(검증의 보조), 제151조(불출석과 과태료등),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69조(감정),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제273조(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등 참조.

◆ 명료(明瞭) → 분명(分明)

“명료(明瞭)”는 ‘뚜렷하고 분명함’을 의미한다. 좀 더 쉽고 일상적인 용어인 ‘분명’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같이 바꾸어 쓰고 있다(제136조, 제140조, 제144조 등)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 명시(明示) → 밝힘

“명시(明示)”는 사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이라는 의미이다. “명시” 자체로도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밝힘’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같이 바꾸어 쓰고 있다(제320조, 제345조, 제377조 등)

제39조 (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밝혀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밝힌)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밝힌)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71조 (감정보고)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밝혀야) 한다.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제336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참조.

◆ 명시한 의사(明示한 意思) → 명시적 의사(明示的 意思)

“명시한 의사”는 일본형사소송법상의 ‘明示した意思’를 직역한 것으로서 우리말의 쓰임새로는 ‘명시적 의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참고로 2006년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는 제3항에서 “명시적 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나머지 용어들도 이와 같이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보조인)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01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

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참고] 제33조 (국선변호인)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232조 (고소의 취소),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제341조 (동전) 참조.

◆ 모두진술(冒頭陳述) → 첫머리 진술

“모두(冒頭)”는 사전적으로 ‘말이나 글의 첫머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두진술”은 ‘첫 번째로 하는 진술’을 의미한다. 법원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첫머리 진술’이라는 표현을 제안하면서 각각 ‘병행사용’ 및 ‘정비된 용어만 사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의 실질적 의미 및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 ‘최초진술’이라는 용어가 낫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왕 바

꾸는 바에야 한자어인 ‘최초’와 ‘최후’로 운율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첫머리’와 ‘마지막’으로 맞추는 편이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첫머리 진술))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몰취(沒取) → 몰수(沒收)

“몰취(沒取)”는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의미한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몰수(沒收)”가 ‘형법상 부가형의 하나’라는 의미와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빼앗아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므로 “몰취” 또한 “몰수”에 포함되는 의미이고, 더욱이 ‘취(取)’라는 표현은 일본어식 표현으로 사용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몰취”를 “몰수”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단순히 ‘빼앗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자고 하고 있다. “몰수”나 “몰취”의 전문법률용어로서의 의미를 감안할 때 단순히 ‘빼앗음’이라는 표현보다는 “몰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102조 (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②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몰수)할 수 있다.

제103조 (유죄판결확정과 보증금의 몰취)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몰수)하여야 한다.

제104조 (보증금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바】

◆ 받어 → 받아

한글 맞춤법상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인 경우에는 어미도 양성모음으로, 음성모음인 경우에는 어미도 음성모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받어’가 정확한 표현이다. 형사소송법은 제196조(사법경찰관리)와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에서, 형법의 경우에는 제35조(누범), 제74조(가석방의 실효), 제252조 제1항(축탁·승낙살인죄), 제269조 제2항(동의낙태죄), 제270조 제1항(업무상동의낙태죄)에서 ‘받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받아’로 표기됨이 타당하다. 참고로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은 이들을 모두 ‘받아’라는 표현으로 고쳐 규정하고 있다(제77조, 제116조 제1항, 제133조 제2항 등).

제196조 (사법경찰관리)

-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발로(發露) → 드러남

“발로(發露)”는 사전적으로 ‘마음속의 것이 행동, 태도, 작품 따위에 겉으로 드러남’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사실이 발로될 염려”는 “사실이 드러날 염려”로 바꾸어 쓰면 좋을 것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견해이다.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드러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 발문(發問) → 질문(質問)

“발문(發問)”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풀어 쓰면 질문을 (발)한다는 의미이므로 일상적인 용어인 ‘질문(質問)’으로 변경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이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②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질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석명권등)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질문)을 요구할 수 있다.

◆ 번잡(煩雜) → 복잡(複雜)

“번잡(煩雜)”은 사전적으로 ‘번거롭게 뒤섞여 어수선히’이라는 의미이다.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혼잡함’, ‘번거로움’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규칙 제146조의 쓰임을 고려할 때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이를 ‘복잡(複雜)’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6조 (판결선고 기일)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내에 하여야 한다. 번잡(→복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2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변개(變改) → 고침

변개(變改)는 사전적으로 무엇인가를 ‘변경(變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기본 형사법령에서 변개라는 용어는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와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양조문은 모두 ‘변개’를 ‘고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국회 법률용

어표준화기준은 이를 ‘바꿈’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고침’으로 표기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다르게 고침’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권장사용’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바꿈’과 ‘고침’은 넓게 보아 유사한 의미이지만,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변개’가 이미 성립된 공문서 등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고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고침)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고치지) 못한다.

◆ 별단(別段)의 → 특별(特別)한

“별단(別段)”은 국어사전에 단순히 ‘별반(別般)’이라는 의미만이 실려 있는 단어이다. 여기서 ‘별반’은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보통과 다름’,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따로 별다르게’라는 의미이다. 이 단어는 ‘별반 다르지 않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며, 이 경우에는 ‘특별히’라는 의미를 갖는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를 ‘다른’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다른’ 또는 ‘특별한’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정비된 용어만 사용’ 의견을 내고 있다. 제333조의 쓰임상 양자 모두 무난하다고 생각되나, 굳이 선택하자면 ‘특별한’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특별한)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병합(併合) → 현재대로

“병합(併合)”은 무엇인가를 ‘아울러서 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법에서는 주로 ‘소(訴)를 병합’한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의 “병합”은 ‘여러 개의 소송을 한 개의 소송으로 심리하는 일’을 말하는 법률전문용어라 할 수 있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과 법원 한자어 순화지침은 이 표현을 ‘함께’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일관하게 되면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형사소송규칙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의 경우에는 ‘함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 못하고 어색한 느낌을 주게 된다. 이 용어는 법률전문용어이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점, 법문상 많은 경우에 대구(對句)를 이루는 “분리”와의 조화 또한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의 견해와 같이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조조문>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제338조(상소권자),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참조.

◆ 보정(補正) → 보완(補完)

“보정(補正)”은 사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함’이라는 의미이다. 법률용어로는 ‘소장(訴狀)의 형식적 요인 따위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이를 정정하고 보충하는 일’을 의미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바로잡음’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규칙 제96조 및 제96조의7에서의 쓰임을 보면, 틀린 것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일정한 사항이 흠결되거나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동조에서의 “보정”은 ‘보완’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 (자료의 제출등)

④판사는 영장 청구서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보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7 (보정(→보완)의 요구)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 신청 여부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 제201조의2제2항 단서에 규정한 서면이 없는 경우 또는 제9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고지가 없거나 그 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그 보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지(保持) → 지킴

“보지(保持)”는 사전적으로 ‘온전하게 잘 지켜 지탱해 나감’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 제116조(주의사항)에서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

여야”는 “타인의 비밀을 지켜야” 정도로 바꾸어 써도 무방할 것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견해이다.

제116조 (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지켜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부가(附加) → 덧붙임, 더함

“부가(附加)”는 사전적으로 ‘주된 것이 덧붙임’이라는 의미이다. 1995년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은 이를 ‘더함’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권장 사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덧붙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덧붙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제152조, 제190조 등). 생각건대 형사소송 관계법령에서 사용되는 “부가”는 경우에 따라 ‘덧붙임’과 ‘더함’으로 선택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제99조(보석의 조건),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서의 “부가”는 ‘덧붙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나, 형사소송규칙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의 “부가”는 ‘더함’으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제99조 (보석의 조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덧붙임) 수 있다.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⑤ 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덧붙임)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44조 (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더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더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더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 15일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 : 2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 : 30일

◆ 부기(附記) → 덧붙여 적음

전술한 바와 같이 “부가(附加)”는 ‘덧붙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때 “부기(附記)”는 ‘덧붙여 적음’이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나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렇게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역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제152조, 제190조, 제211조 등).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제41조 (재판서의 서명등)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등)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재판서의 결정)

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덧붙여 적을)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52조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①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덧붙여 적어)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부득이(不得已) → 어쩔 수 없음

“부득이(不得已)”는 사전적으로 ‘마지못하여 하는 수 없이’라는 의미이다. 특별히 한자어로 써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라는 우리말로 바꾸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부분(副本) → 한자 함께 씀

⇒ “등본(謄本)” 참조.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분(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6조 (공소장부분(副本)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분(副本)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②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분(副本)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副本)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③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副本)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副本)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부원(部員) → 합의부원(合議部員)

형사소송법 제37조와 제273조에 등장하는 “부원(部員)”은 형사소송법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75조(수명법관), 제431조(사실조사)에서의 쓰임을 고려할 때 “합의부원

(合議部員)”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합의부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④전항의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273조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②재판장은 부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부(付)하다 → 부치다

“부(付)”의 음과 훈은 ‘줄 부’ 또는 ‘부칠 부’이다. 따라서 “부(付)하다”는 말은 ‘주다’ 또는 ‘부치다’의 의미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는 “부(付)하다”는 예외 없이 “심판에”라는 말과 호응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부(付)하다”는 ‘부치다’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어의 ‘付ける’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루빨리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 역시 이를 ‘부치다’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참고로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여러 곳에서 “부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제282조, 제472조 등).

제262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④사건을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부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5조 (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①법원은 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그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부쳐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여어진(→부처진)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제338조 (상소권자)

②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여어진(→부처진)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1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와 당해 다른 사건의 검사는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 불가항력(不可抗力) → 어쩔 수 없음

“불가항력(不可抗力)”은 사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을 의미하고, 법률적으로는 ‘외부의 사건에서 거래 관념상의 가능한 주의와 예방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을 말한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를 ‘어쩔 수 없음’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제230조 (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어쩔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불구자(不具者) → 신체장애자(身體障礙者)

“불구자(不具者)”는 사전적으로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한자어의 의미상 ‘있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한 사

람’이라는 의미로서 신체가 불편한 사람을 비하하는 어감이 있다. 따라서 이는 좀 더 가치중립적인 의미의 ‘(신체)장애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도 이와 같은 견해이다.

제471조 (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불능(不能) → 할 수 없음, 불가능

“불능(不能)”은 말 그대로 ‘할 수 없음’ 또는 ‘불가능’을 의미한다. 불필요한 한자어투로서 우리말로의 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형사소송법 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는 제호에서는 “불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본문에서는 “할 수 없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본문의 표현은 적합하다고 생각되나 제호의 표현은 ‘불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98조 (보석과 보증금)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산정도로는 납입하기 불가능한(→납입할 수 없는) 보증금액을 정할 수 없다.

제486조 (환부불능(→환부불가능)과 공고)

①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41조 (서명날인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불능인(→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불명(不明) → 분명하지 않음

“불명(不明)”은 사전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함’이라는 의미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불명(不明)’을 ‘알 수 없는’ 또는 ‘명확하지 아니한’이라는 의미로 바꿀 것을 제안하면서, ‘불분명(不分明)’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불필요한 한자어투이므로 사전적 의미대로 ‘분명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또한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95조(필요적 보석),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등에서 이미 ‘분명하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

①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분명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불복(不服)이 있으면 → 불복(不服)하는 경우

“불복(不服)”은 ‘남의 명령·결정 따위에 대하여 복종·항복·복죄(服罪) 따위를 하지 아니함’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승복(承服)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불복(不服)”은 일상적이고 쉬운 용어는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결정 등에 복종하지 않고 상소·항고 등을 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전문법률용어로서 규범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으며,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 순화안으로 제시한 ‘승복(承服)’ 또한 ‘불복(不服)’과 다름없는 비일상적이고 어려운 용어라는 점에서 적절한 순화안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불복”은 용어 자체는 그대로 사용하되 표현을 약간 수정하여 ‘불복하는 경우’ 정도로 바꾸어 쓰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불복할 수 있다).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불복하는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불복하는 경우)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6조 (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불복하는 경우)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제417조 (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불복하는 경우)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불출석(不出席) → 출석하지 않음

“불출석(不出席)”은 한자가 의미하는 그대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출석하지 않음’이라는 용어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불출석”은 처음부터 제호 등에서 축약용어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자의 조어력을 활용한 경우로, 본문 등에서 이미 “출석하지 아니한 때” 또는 “출석하지 못한 때” 등으로 풀어서 쓰고 있다(제151조, 제271조).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같은 태도이다(제483조). 따라서 똑같이 “불출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래 축약용어를 만든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냥 두고, 본문 등에서 풀어 쓸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후자의 예로는 “출석없이” 등의 일본어식 어투를 사용하는 경우나, 축약이 필요 없는데도 “불출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출석하지 않고’ 및 ‘출석하지 않음’ 정도로 바꾸어 쓰면 좋을 것이다.

제151조 (불출석(→불출석)과 과태료등)

①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271조 (불출석(→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7조 (경미사건등과 피고인의 불출석(→불출석))

다액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78조 (검사의 불출석(→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검사가 출석하지 않고) 개정할 수 있다.

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불출석)등)

①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단, 제2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불허(不許)/불허가(不許可) → 허가하지 않음

“불출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허(不許)” 또는 “불허가(不許可)” 역시 ‘허락하지 않음’이라는 의미이다. 같은 취지에서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허가하지 아니함’이라는 순화안을,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허락하지 아니함’이라는 순화안을 제시하고 있다. 역시 “불출석”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제호 등에서 축약명사형으로 사용할

때는 “불허가”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본문 등과 같이 풀어 쓸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미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제55조의2),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같은 태도이다(제263조).

제39조 (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허가하지 않음)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보석의 심리)

①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허가하지 않음) 것이 명백한 때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 (불허가(→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허가하지 않음)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95조 각호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비공무원(변호인, 피해자) → 공무원(변호인, 피해자) 아닌 사람

‘비(非)’는 명사 앞에 붙어 ‘아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조어법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색한 용어가 되기 쉽다. “비공무원”, “비변호인” 또는 “비피해자”가 그러한 예이다. 따라서 이는 쉽게 풀어서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형사소송법도 제59조에서 제호에서는 “비공무원”이라고 하면서 본문에서는 “공무원 아닌 자”라고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에서 “변호사 아닌 자”, 제109조(수색), 제141

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에서 “피고인 아닌 자”,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에서 “검사 아닌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제59조 (비공무원(→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공무원아닌 자가(→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제91조 (비변호인(→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제225조 (비피해자(→피해자 아닌 사람)인 고소권자)

-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사】

◆ 사료(思料) → 판단(判斷)

“사료(思料)”는 사전적으로 ‘깊이 생각하여 헤아림’이라는 의미로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도 아닐뿐더러 이러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이유도 없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를 ‘판단(判斷)’이라고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는바,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제24조 (회피의 원인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판단)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06조 (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판단)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판단)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판단)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사자(死者) → 죽은 사람

“사자(死者)”는 한자어의 의미 그대로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굳이 한자어로 써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용어로서, 단순히 우리말 ‘죽은 사람’으로 바꾸어 쓰면 충분할 것이다.

제227조 (동전)

사자(→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 사체(死體) → 시체(屍體)

“사체(死體)”는 사전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 따위의 죽은 몸뚱이’를 의미하는 말이다. 일본형사소송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제129조, 제168조). 원래 ‘屍體(した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

확하지만, ‘시(屍)’가 일본어의 상용한자 1,945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발음과 의미가 같은 ‘사(死)’를 이용하여 ‘死體(したい)’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쓰임상 더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체(屍體)’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시체’ 또는 ‘주검’을 순화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시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④사체(→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시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시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22조 (변사자의 검사)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시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 산정(算定) → 계산(計算)

“산정(算定)”은 사전적으로 ‘셈하여 정함’이라는 의미이다. 전문법률 용어도 아니면서 일상적이지 않고 어려운 용어로, 쉬운 표현으로 순

화할 필요가 있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계산(計算)’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94조(부담액의 산정)에서 “산정”은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定)’하기도 한다는 의미이므로, 여기서는 ‘계산하여 정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66조 (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계산)한다.

제194조 (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계산하여 정한다).

◆ 상실(喪失) → 멸실(滅失)

“상실(喪失)”은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상 이 용어가 사용되는 곳은 제131조 뿐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를 ‘분실(紛失)’이라는 용어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즉 제131조만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제132조와의 관련성 및 용어의 통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는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2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제131조의 “상당한 조치”는 곧 “멸실, 파손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31조의 “상실”은 “멸실”로 바뀌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131조 (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멸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용(常用) → 이용(利用)

“상용(常用)”은 사전적으로 ‘일상적으로 씀’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뜻과는 달리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상용(商用)’ 또는 ‘상용(相容)’ 등과 혼동될 염려도 있다. 따라서 이는 쉽고 일상적인 우리말 ‘이용(利用)’으로 바꾸어 쓰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이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 석명(釋明) → 석명(釋明), 설명(說明) 또는 증명(證明)

“석명(釋明)”은 사전적으로 ‘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이라는 의미이다. 법률에서는 “석명권(釋明權)”이라는 용어로 주로 쓰이는데, 이는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해명(解明)’,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은 ‘밝힘’이라는 용어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양자 중 선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설명요구’라는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석명권”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지만, 이미 전문법률용어로서의 규범성을 획득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해명권’이나 ‘설명요구권’ 등의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호 등에서는 법률용어로서의 “석명권”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두되 한자를 함께 쓰고, 본문에서는 “석명(釋明)”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이를 ‘설명’ 등으로 풀어 씀으로써 무슨 말인지 알기 쉽게 풀어 쓰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석명권”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두되 한자를 함께 쓰고, 본문에서 “설명 또는 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석명권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표현하고 있다(제136조, 제137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석명권(→석명권)등)

-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설명)을 구하거나 입증(→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
-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설명 또는 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선거(船車) → 선박(船舶)과 차량(車輛)

“선거(船車)”는 사전적으로 ‘배와 수레’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상 “선거”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형사소송법상 “선거”가 사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주거,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를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가 형법상의 여러 규정, 즉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죄), 제177조(현주건조물일수죄), 제186조(교통방해죄), 제306조(주거침입죄) 등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선박”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박 이외에도 ‘자동차’ 등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형사소송법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와 125조(야간집행의 제한)에 상응하는 일본형사소송법 제114조(책임자의 입회), 제116조(야간집행의 제한)는 그 대상을 “선박(船舶)”이라고 명문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해당 조문을 수용하여 만들어진 우리 형사소송법의 처음의 취지는 “선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선거”가 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조문들은 영장집행, 검증 등 강제처분을 제한하는 성격의 것들이므로 ‘선박’ 이외에 ‘차량’이 포함된다 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船車)”를 그대로 우리말로 풀어서 ‘선박과 차량’이라고 바꾸어 써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①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거(→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관리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제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서기관 또는 서기가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143조 (시각의 제한)

- ①일출전, 일몰후에는 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 소명(疏明) → 한자 함께 씀

“소명(疏明)”은 사전적으로 ‘까답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이라는 뜻이다. 법률적으로는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법제처 법률용어순화편람은 이를 ‘증거제시’ 또는 ‘변명’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변명(辨明)’이라는 단어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고, “소명”이 단지 ‘증거자료’만이 아니라 그에 관련한 설명 등을 포함하여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행위 일반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증거제시’라는 표현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현재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함께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소명(疏明))하여야 한다.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소명(疏明))하여야 한다.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소명(疏明))하여야 한다.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③전2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소명(疏明))하여야 한다.

제346조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소명(疏明))하여야 한다.

◆ 소요(所要)되는 → 필요(必要)한

“소요(所要)”는 한자어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 쓰면 ‘필요로 하거나 요구되는 바’라는 뜻이다. 불필요한 한자어로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는 용어로서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의 전형적인 예이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이를 ‘필요한’ 또는 ‘사용되는’이라는 용어로,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비용이) 들다’ 또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용어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단순히 ‘필요한’ 정도의 용어로 순화하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①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피의자의 호송등에 소요되는(→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되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 소할(所轄) → 관할(管轄)

‘관할(管轄)’은 ‘일정한 권한에 의하여 통제하거나 지배함’이라는 의미이고, ‘소할(所轄)’은 사전적으로 ‘관할하는 바’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양자는 의미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법령용어 통일화의 관점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주로 쓰이는 “관할(管轄)”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본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 또한 이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①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소할(→관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이내에 소할(→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수리한 고등검찰청검사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첨부하여 소할(→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소할(→관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기록을 소할(→관할)고등법원에 송치한다.

제262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보를 재정신청인, 피의자와 소할(→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소환(召喚) → 출석요구(出席要求)

“소환(召喚)”은 한자의 의미로만 보자면 단순히 ‘부른다’는 의미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공판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을 의미한다. 한자어로서는 일상적이지 않은 어려운 용어이나, 용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 외의 규범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전문법률용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그대로 써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용어의 의미나 형사소송법상의 쓰임을 고려하면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출석요구’라는 표현으로 바꾸어도 그 의미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형사소송법도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제200조의2(체포),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21조(제삼자의 출석요구) 등에서 “출석요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이를 “출석요구”(제309조) 또는 “기일통지”(제150조, 제217조, 제208조)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면서 때에 따라서는 양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제167조, 제168조). 법령용어 순화 및 통일화의 관점에서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68조 (소환(→출석요구))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법원은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환장을(→출석요구서를),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소환장(→출석요구서)의 송달)

- ① 소환장은(→출석요구서는) 송달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출석요구서)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④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리에게 통지하여 소환(→출석을 요구)한다.
- ⑤ 피고인이 교도관리로부터 소환(→출석요구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출석요구서)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출석요구))

- ①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그러한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소환(→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제102조(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제103조(유죄판결확정과 보증금의 몰취),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제151조(불출석과 과태료등), 제152조(소환(→출석요구)불응과 구인), 제153조(준용규정),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제165조(증인의 법정외신문),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제294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참조.

◆ 속행(續行) → 계속 진행(繼續 進行)

“속행(續行)”은 한자의 의미 그대로 ‘계속하여 행한다’는 의미이다. 어렵고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계속하여 진행’이라는 표현을,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계속함’이라는 표현을 순화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단순히 ‘계속 진행함’ 정도의 표현으로 충분할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규칙 제154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송달(送達) → 현재대로

“송달(送達)”은 사전적으로 ‘편지, 서류, 물품 따위를 보내어 줌’이라는 의미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를 ‘보냄’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송달”은 한자어의 의미만으로는 단순히 ‘보낸다’는 의미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범적 의미를 가진 전문법률용어를 ‘보낸다’는 단선적인 용어로는 그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는 현재와 같이 “송달”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95 법원행

정처 검토의견도 같은 견해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도 일반적 의미에서의 ‘송달’은 ‘보냄’으로 순화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법률용어로서의 “송달”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여전히 “송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관련조문>

제32조의2(대표변호인),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76조(소환장의 송달), 제266조(공소장부분의 송달),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 송부(送付) → 보냄

위의 “송달”의 경우와 달리 “송부(送付)”는 단순히 ‘보내다’는 의미 이외에 특별한 규범적 의미를 갖는 용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모두 이를 ‘보냄’이라는 용어로 순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제호 등 축약명사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부”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보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제298조, 제352조, 제400조 등). 형사소송법 또한 이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보내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보내야) 한다.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⑥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보내야) 한다.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보내야) 한다.

제262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와 소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보내야) 한다.

그 밖에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제291조(동전), 제353조(상소포기등의 관할),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 결정),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참조.

◆ 송치(送致) → 현재대로

“송치(送致)”은 한자어의 의미를 풀어 쓰면 ‘서류나 물건 따위를 보내어 정해진 곳에 이르게 함’이라는 의미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을 의미하는 전문법률용어로서의 의미이다. 법제처 법률용어순화편람은 군검찰사무처리규칙상의 “송치부(送致簿)”라는 용어를 ‘보내는(보낸) 장부’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

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송치”의 규범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순화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는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관련조문>

법원의 송치와 관련된 조문으로는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 검사의 송치와 관련된 조문으로는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제256조(타관송치), 제256조의2(군검찰관에의 사건송치),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등 참조.

◆ 수개(數箇) → 여러 개

접두사로 쓰이는 “수(數)”는 ‘여럿’의 의미이다. 따라서 “수개(數箇)”는 ‘여러 개’, “수인(數人)”은 ‘여러 사람’, “수통(數筒)”은 ‘여러 통’을 의미하게 된다. 불필요한 한자어를 줄이고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표현한다는 법령용어 순화의 관점에서 위와 같이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국어연구원 법령안순화세부지침,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 등도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렇게 바꾸어 쓰고 있다(제25조, 제53조, 제65조 등).

제 5 조 (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 6 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 9 조 (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여러 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제13조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⑤수개(→여러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수리(受理) → 받음

“수리(受理)”는 ‘서류를 받아서 처리함’이라는 의미이다. ‘받는’ 행위에 중점이 두어져 있으므로 우리말 ‘받음’으로 바꾸어 쓰면 좋을 것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받음’을,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받아들임’을 순화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양자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받아들임’이라는 표현은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에 있어서와 같이 “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으로 바꾸면 재정신청을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어감을 주게 되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받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의 경우 이를 ‘받기’ 등으로 고치는 경우 어색한 표현이 되므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받음)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① 재정신청을 수리한(→받음)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이내에 소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수리한(→받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첨부하여 소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기록을 소할고등법원에 송치한다.

제262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①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받은)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수수(授受) → 주고받음

“수수(授受)”는 한자어의 뜻 그대로 ‘주고받음’이라는 의미이다. 불필요한 한자어이므로 쉬운 우리말 ‘주고 받음’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 및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도 같은 견해이다.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주고받음)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주고받을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열하거나,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은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 수인(數人) → 여러 명

앞서 본 바와 같이 “수(數)”라는 접두어가 ‘여럿’을 의미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수인(數人)”을 어떠한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할 것인가이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여럿’이라는 표현을,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여러 사람’이라는 표현을, 국어연구원 법령안순화세부지침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여러 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제25조(관련재판적), 제53조(선정당사자),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등에서 “여러 사람”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이 이 표현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에서는 개정 전 “선정된 수인의 당사자 가운데”이던 표현을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라고 바꾸고,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에서는 개정 전 “수인의 소송대리인

이 있는 때”이었던 표현을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으로 바꾸고 있다.

위에서 제안된 표현들은 모두 같은 의미의 우리말로 어떤 표현을 선택하더라도 의미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여러 사람’이라는 표현을 선택하는 경우 이 말이 뒤에 오는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등과 결합하여 ‘여러 사람의 소송대리인’ 또는 ‘여러 사람의 변호인’이라는 표현이 되면, 이 말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여러 명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명의 당사자를 위한 한 명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라는 것인지가 혼동될 염려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람” 대신 “여러”를 사용하고 있는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러한 난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도 제32조의2(대표변호인),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등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조문들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서는 ‘여러 명’이라는 표현을 기본으로 하되, 확실적으로 한 가지의 용어로만 바꿀 것이 아니라 조문에 따라 ‘여러 명’ 또는 ‘여럿’ 등 문맥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바꾸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2. 수인(→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②수인(→여러 명)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제32조의2 (대표변호인)

①수인(→여러 명)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

는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여러 명)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여러 명)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71조 (감정보고)

② 감정인이 수인(→여러 명)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1조 (수인(→여러 명)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여러 명)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94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수가 다수(→여러 명)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수진(受診) → 진료(診療)

“수진(受診)”은 한자의 의미 그대로 ‘진찰을 받음’이라는 의미이다. 한자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글자이지만 이를 한글로만 써 놓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본문에서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제호의 “수진(受診)”은 ‘진료(診療)’ 정도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수

진자(受診者)’를 ‘진료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진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수통(數筒) → 여러 통

“수(數)”의 의미는 “수개(數箇)” 및 “수인(數人)”에서 본 바와 같다. “통(筒)”은 편지나 서류 등을 헤아리는 조수사로 우리말로서의 쓰임이 확고할 뿐 아니라 이를 대체할 용어도 적당치 않다. 따라서 “수통(數筒)”은 ‘여러 통’으로 바꾸어 쓰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제82조 (수통(→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수통(→여러 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영장청구의 방식)

② 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계기한 서면1통(수통(→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5조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수통(→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순차(順次) → 차례

“순차(順次)”는 ‘돌아오는 차례’라는 의미이다.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의 전형적인 예이다. 우리말 ‘차례’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순차로’를 ‘차례로’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②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차례로 하는)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

제287조 (피고인신문의 방식)

①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차례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 시일(時日) → 일시(日時)

“시일(時日)”은 한자어의 의미로 볼 때 충분히 그 뜻을 알 수 있는 말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일시(日時)’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의 제안도 이와 같다. 형사소송법도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등에서 이미 “일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②증인신문의 시일과(→일시와)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문(訊問) → 현재대로

“신문(訊問)”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이라는 의미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러한 의미에서 ‘캐 물음’이라는 용어를 순화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형사소송상 이미 확고하게 뿌리내린 전문법률용어로서, 법률적으로는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조문>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제146조(증인의 자격),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제156조(증인의 선서), 제159조(선서무능력),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제164조(신문의 청구), 제165조(증인의 법정외신문),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제179조(감정증인),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 제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 등),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73조(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제284조(인정신문), 제287조(피고인신문의 방식), 제289조(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제290조(증거조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제294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제302조(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 신빙(信憑) → 신뢰(信賴)

“신빙(信憑)”에서 ‘빙(憑)’은 ‘의지하다’ 또는 ‘의거하다’라는 의미로, “신빙(信憑)”은 ‘믿어서 근거나 증거로 삼음’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상 “신빙”은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라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진술이 이루어진 정황 등이)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어떠한 사실 자체 등을) 믿는다’는 표현만으로는 “신빙”의 의미를 모두 포섭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는 ‘신용’이나 ‘신뢰’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를 ‘신용’으로 순화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신용’은 ‘굳게 믿고 의지함’, ‘신뢰’는 ‘사람이나 사물이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하지 아니함’이라는 의미로서 양자의 사전적 의미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말의 어감상 더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신용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와 ‘신뢰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라는 표현을 비교해 보면, “신빙”의 이러한 어감을 자연스럽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는 ‘신뢰’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음이 생각된다.

참고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와 형사소송규칙 제77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의 “신용” 또한 ‘신뢰’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신뢰)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신뢰)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3조 (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신뢰)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신뢰)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

제316조 (전문인 진술)

①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신뢰)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신뢰)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신용(信用) → 신뢰(信賴)

⇒ “신빙(信憑)” 참조.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계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 기타 특히 신용(→신뢰)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형사소송규칙 제77조 (증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②제1항에 규정한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등 증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등 증인의 신용성(→신뢰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실비(實費) → 실제 비용(實際 費用)

“실비(實費)”는 사전적으로 ‘실제로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용어를 축약하여 법문에 사용함으로써 표현이 어색하거나 원래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이를 풀어 쓰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실비”의 경우 ‘실제 비용’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적절한 견해로 생각된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③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실제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심신장애(心神障礙) → 정신장애(精神障礙)

법률상 “심신”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심신(心神)”과 “심신(心身)”의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된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심신(心神)”은 ‘마음과 정신’의 의미이고, “심신(心身)”은 ‘마음과 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발음은 같지만 전자는 정신장애만을 의미하고 후자는 정신장애 뿐 아니라 신체장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서로 다르다. 1992년의 형법개정법률안은 심신장애자(제10조)와 준사기죄(제348조 제1항)에서 사용하고 있던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정신장애’라는 용어로 바꾸어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21조 및 제212조). “심신(心神)”이라는 표현이 매우 어려워 잘 쓰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한글로 쓰인 경우에는 ‘심신(心身)’장애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신의학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정하기로 한 것이었다.

후자가 사용되는 예로 법원조직법 제47조는 “법관이 중대한 심신(心身)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39조 또한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 대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의 해당 조문은 최근 신설된 것으로 한자로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동조가 신설된 시기(2004.1.20)나 조문의 구조로 볼 때 법원조직법과 같은 취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심신장애’ 또는 ‘심신장애’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그러나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제33조, 제424조, 제438조, 제469조, 470조 등에서 “심신장애(心神障礙)” 또는 “심신(心神)의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정신장애’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제33조 (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心神)장애(→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 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心身)장애(→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438조 (재심의 심판)

② 다음 경우에는 제306조제1항, 제3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心神)장애자(→정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心神)장애자(→정신장애자)로 된 때

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 ①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心神)의 장애(→정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心神)장애(→정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心神)의 장애(→정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心神)장애(→정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 심판(審判) → 심리(審理) · 재판(裁判)

“심판(審判)”은 법률적으로 ‘심리(審理)와 재판(裁判)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법령용어의 순화가 한자어 또는 일본어투의 순화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축약의 지양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원래의 말인 ‘심리 · 재판’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의 견해도 같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이같이 바꾸어 쓰고 있다(제34조, 제88조, 제454조 등).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심리 · 재판)한다.

제13조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심리·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심리·재판)하게 할 수 있다.

제262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①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있을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2.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심리·재판)에 부한다.

④ 사건을 지방법원의 심판(→심리·재판)에 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5조 (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① 법원은 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그 법원의 심판(→심리·재판)에 부하여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참고] 제361조의5 (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심리·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그 밖에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제338조(상소권자),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제370조(준용규정), 제384조(심판범위), 제399조(준용규정), 제438조(재심의 심판), 제441조(비상상고이유), 제450조(보통의 심판), 제455조(기각의 결정) 참조.

【아】

◆ 압수(押收) → 현재대로

“압수(押收)”는 사전적으로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음’이라는 의미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를 ‘거둬 감’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는 법률적으로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의 의미로서, 단순히 강제로 ‘거둬 가는 것’ 이상의 규범적 의미를 지니는 전문법률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는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과 같이 현재대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관련조문>

제49조(검증등의 조서),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제106조(압수),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제108조(임의제출물등의 압수), 제109조(수색), 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제113조(압수·수색영장), 제114조(영장의 방식), 제115조(영장의 집행), 제116조(주의사항), 제117조(집행의 보조), 제118조(영장의 제시), 제119조(집행중의 출입금지),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1조(주의사항),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제136조(수명법관, 수

탁판사),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38조(준용규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7조(동전),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9조(준용규정),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제403조(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16조(준항고), 제417조(동전), 제485조(위조등의 표시), 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 엄수(嚴守) → 지킴

“엄수(嚴守)”는 사전적으로 ‘명령이나 약속 따위를 어김없이 지킴’이라는 의미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를 ‘꼭 지킴’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단순히 ‘지킴’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제198조 (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지킴)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여부(與否) → 할 것인지(한지) 아닌지

“여부(與否)”는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이라는 의미이다. 문맥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라는 선택적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말로 표시하는 것이 훨씬 쉽고 자연스럽다. 다만, 제호나 명사구로 이루어진 선택항 등에서는 이를 풀어 쓰는 것이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형사소송법 제51조 및 제389조의2), 이러한 경우에는 “여부”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원칙적으로 ‘-할 것인지(한지) 아닌지’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되(제73조, 제134조, 202

조 등), 제호나 명사구의 선택항에서는 “여부”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제73조, 153조, 제250조 등). 참고로 민사소송법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일본어식 표현(するかどうか)이라는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

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물어야 한다.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의 출석여부(→여부)

5. 공개의 여부(→여부)와 공개를 금한 경우에는 그 이유

제201조 (구속)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제1항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심문을 신청할 것인지 아닌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공소제기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89조의2 (피고인의 소환 여부(→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 열석(列席) → 출석(出席)

“열석(列席)”은 ‘자리에 죽 벌여서 앉음’ 또는 ‘식장이나 회의장 따위에 참석함’이라는 의미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를 ‘줄지어 앉음’ 또는 ‘참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는 곳은 제275조 한 곳으로, 이 조문에서의 “열석(列席)”은 ‘참석’ 또는 ‘출석’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판사와 법원공무원 및 검사가 공판에 참석하는 것을 다른 명칭으로 불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같은 조에서 검사의 공판 참석에 “출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충분할 것이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도 ‘출석’이라는 표현을 제안하고 있다.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②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가 열석(→출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 예납(豫納) → 미리 냄

“예납(豫納)”은 ‘정하여진 날이 되기 전에 미리 냄’이라는 의미이다. 한자어를 풀어 쓰면 ‘미리 납부’가 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납부(納付)”는 축약명사형으로 쓰이지 않는 이상 ‘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예납” 또한 ‘미리 냄’으로 하면 충분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나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도 이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미리 내야) 한다.

◆ 오기(誤記) → 잘못된 기록

“오기(誤記)”는 ‘잘못 기록함 또는 그 기록’이라는 의미이다. 한글로 표기하여도 뜻의 변화나 문맥의 흐름에 영향이 전혀 없어서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나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를 ‘잘못된 기록’으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타당한 견해이다.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②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가(→잘못된 기록이)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잘못된 기록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재판서의 결정)

①재판서에 오기(→잘못된 기록)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오류(誤謬) → 잘못

“오류(誤謬)”는 사전적으로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서 사용되는 “오류”는 모두 판결의 내용 또는 재판서의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용어가 사전적인 의미 외에 특별한 규범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및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쉬운 우리말인 ‘잘못’으로 바꾸어 쓰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①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재판서의 결정)

①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완납(完納) → 다 념

“완납(完納)”은 ‘남김없이 완전히 납부함’이라는 의미이다. “납부(納付)”를 ‘념’으로 순화하고 있는 이상, ‘완전히 납부함’이라는 의미를 갖는 “완납”도 이에 걸맞는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다 념’이라는 표현을,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다 념’이라는 표현과 ‘모두 념’이라는 표현을 선택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의미는 같지만 어감상 ‘다 념’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다 념)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다 내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완료(完了) → 끝냄

“완료(完了)”는 사전적으로 ‘완전히 끝마침’이라는 의미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끝냄’ 또는 ‘마침’이라는 표현을 순화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끝냄’으로 순화하면 충분할 것이다.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끝냄)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끝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끝내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외(外) → 밖, 이외, 제외

“외(外)”는 한 가지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내(內)”와는 달리, 물리적으로는 ‘밖’ 또는 ‘바깥’이라는 표현을, 관념적으로는 ‘이외’ 또는 ‘제외’ 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바꾸어 써야 할 것이다.

제 3 조 (관할구역외(→밖)에서의 집행)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②전항 단행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밖)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외(→이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이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 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 밖에 ‘밖’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로는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제83조(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113조(압수·수색영장),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 등이, ‘이외’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로는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97조(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제165조(증인의 법정외신문), 제172조(법원외의 감정), 제178조(여비, 감정료등),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제403조(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제438조(재심의 심판), 제447조(판결의 효력), 제461조(집행지휘의 방식), 제462조(형집행의 순서), 등이 있고, ‘제외’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로는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제25조(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77조(준용규정), 제214조의3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등이 있다.

◆ 요급처분(要急處分) →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처분

“요급(要急)”은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용어로서, 한자를 풀어 쓰면 ‘긴급(급속)을 필요로 함’이라는 표현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책에서는 “긴급(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응용하면 “요급처분”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처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이다.

제80조 (요급처분(→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0조 (요급처분(→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 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요(要)하다 → 필요로 하다

“요(要)하다”는 같은 뜻의 일본어 ‘要する’를 직역한 것이다. 우리말의 어법에 맞게 ‘필요로 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써야 할 것이다.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필요로 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필요로 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비용이 필요한) 때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제110조 (군사상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필요로 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액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48조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필요로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제389조의2 (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477조 (재산형등의 집행)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우려(憂慮) → 염려(念慮)

“우려(憂慮)”는 사전적으로 ‘근심하거나 걱정함 또는 그 근심과 걱정’이라는 의미이고, “염려(念慮)”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이라는 의미로서 양자는 같은 의미라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염려”와(제15조, 제18조, 제70조, 제74조, 제91조, 제95조, 제101조 등), 우려(제200조의2, 제294조의2)를 섞어 사용하고 있다. 사용의 빈도로 보나 일반인의 이해도로 보나 “염려”가 더 일반화된 용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령용어 통일화의 관점에서 “염려”로 통일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제200조의2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294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염려)가 있는 경우

◆ 우체(郵遞)에 부치다 → 우편(郵便)으로 보내다

“우체(郵遞)”는 국어사전에 ‘우편(郵便)’과 동의어라고만 해설되고 있는 용어이다. 일상적으로는 ‘우체통’이라는 표현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므로, 좀 더 쉬운 ‘우편’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꾸는 경우 “우체에 부치다”라는 용어는 ‘우편으로 보내다’로, “우체물”은 ‘우편물’로 각각 바꾸면 될 것이다. 참고로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우체료’를 ‘우편요금’으로, ‘우체통’을 ‘우편함’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61조 (우체에 부치는(→우편으로 보내는) 송달)

- ①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②서류를 우체에 부친(→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7조 (우체물(→우편물)의 압수)

①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 이외의 우체물(→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 원본(原本) → 한자 함께 씀

⇒ “등본(謄本)” 참조.

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原本)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외에는 재판서의 원본(原本),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 원인(原因) → 사유(事由)

형사소송법상의 “원인”은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한 일본형사소송법 제20조 이하의 용어가 우리 형법에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 “원인(原因)”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는 하지만, 그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

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원인”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보다는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사유(事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표현 또한 이와 같이 바꾸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이를 ‘이유(理由)’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제척·기피·회피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요건의 의미를 표현하는 법률용어로는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를 의미하는 ‘이유’라는 표현보다는 ‘일의 까닭’을 의미하는 ‘사유’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46조의 “원인된 사유”는 단순히 “사유”라고 표현하면 충분할 것이다.

제17조 (제척의 원인(→사유))²⁾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8조 (기피의 원인(→사유와)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동조는 2005.3.31. 개정에 의해 “호주”가 삭제되었다. 시행일은 2008.1.1.이다.

제24조 (회피의 원인(→사유)등)

-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사유))

-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때에도 전항과 같다.

◆ 위반(違反) → 현재대로

형사소송법은 법률이 요구하는 일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위반(違反)”과 “위배(違背)”의 두 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규정에 위반”(제327조 제4호)과 “규정에 위배”(제20조),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제360조 제1항, 제376조 제1항 등)과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제262조 제1항 제1호)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입법자가 양자간의 본질적인 차별화를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어사전은 “위반(違反)”과 “위배(違背)”를 동의어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양자를 모두 ‘어긋남’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들 용어를 모두 “어긋남”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어긋남”은 사전적으로 ‘잘 맞물려 있는 물체가 틀어져서 맞지 아니하다’ 또는 ‘방향이 비껴서 서로 만나지 못하다’라는 의미로서 규칙, 명령, 약속, 시간 따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굳이 이를 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어긋’이라고

하여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형사소송법상 “위반”과 “위배”를 모두 ‘어김’이라는 용어로 바꾸더라도 결국 축약명사형으로서의 “위반” 또는 “위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굳이 이를 ‘어김’이라는 오히려 생소한 우리말로 바꾸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위반” 또는 “위배”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가운데서는 “위반”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일반인들도 그 의미가 어떠한 ‘규칙’을 어긴다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용어는 “위반”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또한 “위배”를 “위반”으로 고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관련조문>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제102조(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제320조(토지관할위반),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제361조의5 (항소이유),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제383조(상고기유),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제415조(재항고),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제441조(비상상고기유), 제446조(파기의 판결), 제455조(기각의 결정)

◆ 위배(違背) → 위반(違反)

“위배(違背)” 참조.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위반)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제119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위반)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262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①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있을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위반)하거나 이유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조 (기피신청의 방식등)

②제1항에 위배(→위반)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 위촉(委囑) → 의뢰(依賴)

“위촉(委囑)”은 사전적으로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이라는 의미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맡김’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위촉”이라는 표현은 주로 “감정(鑑定)”과 결합하고 있는데, 위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이 표현과 결합하는 동사의 예로 ‘맡다’와 ‘의뢰하다’를 들고 있다. “감정”과 결합하는 술어로서 ‘맡기는’이라는 표현과 ‘의뢰하는’이라는 표현을 비교하여 보면, 전자는 순우리말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후자에 비해 용어의 쓰임새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 ‘의뢰’라는 표현은 한자어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용어로 정착된 용어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촉”은 ‘의뢰’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21조 (제삼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의뢰)할 수 있다.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의뢰)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21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감정을 의뢰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 유년(幼年) → 어림

“유년(幼年)”은 사전적으로 ‘어린 나이나 때’를 의미한다. 불필요한 한자어의 사용으로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히 ‘어리다’는 표현으로 충분할 것이다.

제471조 (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어리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유무(有無) → 있는지 없는지

“유무(有無)”는 ‘있음과 없음’을 한자어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 ‘있고 없음’으로 바꾸어 써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단어의 문맥 속에서의 쓰임을 고려할 때 ‘있는지 없는지’가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불법체포·구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6조의13 (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무(→구속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34조 (증거결정의 절차)

②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증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3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류(遺留) → 남겨 놓음

“유류(遺留)”의 사전적 의미는 ‘끼치어 둠’ 또는 ‘어떤 것을 후세에 남기어 둠’이라는 뜻이다.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유류물은 일정한 사람이 ‘남겨 둔’ 물건이다. 따라서 제108조(임의 제출물등의 압수)나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서의 “유류(遺留)한”은 “남겨 놓은”으로 바꾸어 써도 무방할 것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의견이다.

제108조 (임의제출물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남겨 놓은)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남겨 놓은)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유사(類似) → 비슷함

“유사(類似)”는 ‘서로 비슷함’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 ‘비슷함’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법제처 법령용어 순화편람 역시 ‘비슷함’이라는 용어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재판서의 결정)

①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비슷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응(應)하다 → 따르다

무엇무엇에 “응(應)하여”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의 일본어 “應(おう)じて”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우리말로 무엇이 ‘따라’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모두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타당한 견해로 생각된다.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③ 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따르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200조의2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따르지) 아니하거나 응하지(→따르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②소환에 응하지(→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 의(依)한/의(依)하여 → 따른/따라

“의(依)하다”는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 또는 무엇으로 말미암다’라는 의미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지만, 이와 바꾸어 써도 의미의 변화가 없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표현이 있다면 그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국어연구원 법령안순화세부지침,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모두 ‘의한’ 또는 ‘의하여’라는 표현을 ‘따른’ 또는 ‘따라’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형사소송

법상의 “의하여”라는 용어 중에는 ‘따라’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일정한 행위의 ‘행위자’를 나타내는 표현의 경우가 그러하다. 예컨대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나 제420조(재심이유)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 증명된 경우”는 ‘따라’로 바꿀 것이 아니라 현재대로 “의하여”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의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는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와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의 “조서(공소장)에 의하여”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조서(공소장)에 적힌 대로’ 정도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한다.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등)

②차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조서에 적힌 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한(→따른)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따라)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제277조의2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 밖에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제179조(감정증인), 제200조의2 (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참조.

◆ 의제(擬制) → 간주(看做), 봄

“의제(擬制)”는 사전적으로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를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제를 하게 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보게(간주)’ 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모두 이를 ‘간주’라는 용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도 “의제”를 모두 “간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간주” 또한 “봄”이라는 우리말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서의 입장에서는 제호에서는 “간주”를 쓰고 본문에서는 “봄”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263조 (공소제기의 의제(→간주))

제262조제1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본)다.

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간주))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 의의신청(疑義申請) → 재판해석(裁判解釋)의 신청(申請)

“의의(疑義)”는 사전적으로 ‘글 뜻 가운데 의심스러운 부분’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제488조(의의신청) 단 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용어일 뿐 아니라 법률용어로서도 생소한 용어이다. 주석형사소송법은 이 용어가 ‘재판해석의 신청’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 ‘의의(疑義)신청’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이의(異議)신청’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해석의 신청’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생각건대 제호만으로도 조문의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호에서는 ‘재판해석의 신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본문의 “의의”는 ‘의문’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일본형사소송법은 제501조에서 “재판의 해석을 요구하는 신청”이라는 제호 아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재판의 해석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선고를 한 법원에 재판의 해석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우리 형사소송법과 거의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488조 (의의신청(→재판해석의 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의문)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재판의 해석을 신청) 할 수 있다.

◆ 이를 → 삭제

“이를”이라는 표현은 보통 앞에 나오는 말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목적격 지시대명사로 쓰인다. 이러한 문장의 쓰임은 같은 뜻의 일본어 ‘これを’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필요한 동어반복으로서 삭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어연구원 법령안순화세부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다만, 문장이 길어지거나 별개의 문장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의 단어를 다시 한 번 써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 7 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사건을)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삭제) 기각한다.

제32조의2 (대표변호인)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삭제) 준용한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①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속기나 녹음을) 명할 수 있다.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제200조의5 (준용규정)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삭제)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삭제)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삭제) “체포영장”으로 본다.

그 밖에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57조(선서의 방식),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제172조(법원외의 감정),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제201조(구속), 제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90조(증거조사),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6조(전문의 진술),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431조(사실조사), 제445조(기각의 판결),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제484조(몰수물의 교부),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참조.

◆ 이송(移送) → 현재대로

“이송(移送)”과 “환송(還送)”은 사전적으로는 ‘다른 데로 옮겨 보냄’ 및 ‘도로 돌려보냄’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 쓰이는 “이송”과 “환송”은 단순히 ‘옮겨 보냄’ 또는 ‘돌려보냄’의 의미를 넘어서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소송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 및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 심리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1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전문법률용어이다. 용어 자체가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규범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순화할만한 적절한 용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통틀어 “이송”이 위와 같은 의미 이외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한 곳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는 일정한 경우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다른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옮기는 것을 “이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송”이라는 표현의 규범적 의미를 고려할 때 단순히 ‘보낸다’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제처 법률용어순화편람은 “환송”은 ‘(되)돌려 보내다’로, “이송”은 ‘(옮겨) 보내다’라는 표현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송”의 경우 예시조문으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와 제367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361조의2(제361조라고 하고 있으나 제361조의2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에만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 인장(印章) → 도장(圖章)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인장(印章)”은 ‘도장(圖章)’으로, “지장(指章)”은 ‘손도장’으로 각각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도장)이 없으면 지장(→손도장)으로 한다.

◆ 인(因)한/인(因)하여 → 말미암은/말미암아

“인(因)하다”는 말은 ‘어떤 사실로 말미암다’라는 의미이다. 단순히 쉬운 우리말 ‘말미암다’로 바꾸어 써도 그 뜻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이해하기도 쉬우므로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범죄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94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범죄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말미암아)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말미암아)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

제316조 (전문의 진술)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말미암아)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말미암아)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420조(재심이유), 제460조(집행지휘), 제471조(동전), 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참조.

◆ 인거인(隣居人) → 이웃에 사는 사람

한자어의 의미상으로는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의 쓰임은 영장의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는 때에 거주자 등이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를 대신 참여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웃에 사는 사람’과 ‘이웃집’을 들면서 그 가운데 후자의 표현이 낫다고 한다. 그러나 “인거인”과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므로 “인거인(隣居

人)” 또한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①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③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이웃에 사는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인도(引渡) → 넘겨줌

“인도(引渡)”는 사전적으로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줌’이라는 의미이다. 국어사전은 “인도”가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경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지배의 이전’이라는 의미 이외에 다른 규범적 의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건네줌’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넘겨줌’이라는 표현을 제안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는 “인도”는 특히 ‘사람’에 대한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제213조, 제213조의2, 제470조 등 참조), ‘넘겨줌’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넘겨주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현행범인을 넘겨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3조의2 (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현행범인을 넘겨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넘겨주어)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 인정신문(認定訊問) → 인적사항신문(人的事項訊問)

“인정신문(認定訊問)”이란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절차, 즉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소, 직업 따위를 물어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한자어로는 이러한 뜻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 ‘사람을 정하는 신문’ 또는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신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정신문이라는 용어의 법적 취지를 가장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신문’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의견이다.

제284조 (인정신문(→인적사항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등의 고지)

①재판장은 인정신문(→인적사항신문)이 끝난 후 또는 검사에게 기소요지의 진술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①법 제301조, 법 제301조의2 또는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판장은 법 제28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문(→인적사항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일출(日出)/일몰(日沒) → 해뜸/해짐

“일출(日出)”과 “일몰(日沒)”은 풀어 쓰면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개념정의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 및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 또한 이를 ‘해가 뜬’과 ‘해가 짐’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불필요한 한자어의 사용을 방지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해뜨기 전), 일몰후(→해진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43조 (시각의 제한)

①일출전(→해뜨기 전), 일몰후(→해진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후(→해진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일몰전(→해지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후(→해진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일출전(→해뜨기 전) 또는 일몰후(→해진 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입정(入廷) → 법정(法庭)에 들어감

⇒ “개정(開廷)” 참조.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법정에 들어오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 입증(立證) → 증명(證明)

“입증(立證)”은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이라는 의미이다. ‘증거를 내세움’이라는 의미의 “입증”이나 ‘증거를 들어 밝힘’이라는 의미의 ‘증명’은 결국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모두 한자어이지만 ‘증명’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이므로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처 법령용어 순화편람도 같은 견해이다.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

◆ 잉태(孕胎) → 임신(妊娠)

“잉태(孕胎)”는 사전적으로 ‘임신(妊娠)’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임신’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견해이다.

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임신)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제471조 (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3. 잉태(→임신)후 6월이상인 때

【자】

◆ 자(者) → 사람

“자(者)”는 사전적으로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좀 알잡아 이르는 말로서, ‘사람 또는 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일본어에서 ‘もの’라고 훈독(訓讀)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음독(音讀)한 것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특히 형법의 경우 “자(者)”와 “사

람”을 섞어 사용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경우에는 “자(者)”라는 표현을,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양자를 구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이라는 표현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형법 전반에 걸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者)”는 좀 더 부드럽고 비권위적인 표현인 ‘사람’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나 국어연구원 법령안순화세부지침 또한 “자(者)”를 ‘사람’으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자(者)”를 모두 “사람”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제54조, 제80조, 제107조 등). 형사소송법의 “자(者)” 또한 ‘사람’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제25조 (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②전항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사람)의 소속법관이 한다.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사람과)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④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사람)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 (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사람)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

사람)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는(→사람은)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 (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19조(집행중의 출입금지),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60조(재정신청),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제354조(상소포기후의 재상소의 금지),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38조(재심의 심판),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참조.

◆ 자수(字數)/자체(字體) → 글자의 수/글자의 형태

“자수(字數)”와 “자체(字體)”는 한자가 의미하는 뜻 그대로이다. 따라서 한자의 뜻을 우리말로 풀어서 ‘글자의 수’ 및 ‘글자의 형태’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써야 할 것이다.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글자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

체(→글자의 형태)를 존치하여야 한다.

◆ 재개(再開) - 다시 열

“재개(再開)”는 한자어의 의미 그대로 ‘다시 열다’라는 의미이다. 그러한 표현으로 바꾸면 충분할 것이다. 다만, 축약명사형으로 쓸 때는 현재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본다.

제305조 (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다시 열) 수 있다.

◆ 재정(在廷) → 법정 안에 있음

⇒ “개정(開廷)” 참조.

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법정 안에 있는)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81조 (피고인의 재정(在廷)의무, 법정경찰권)

-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 ①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법정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 재정(裁定) → 현재대로

“재정(裁定)”은 ‘일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결정함’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재정(裁定)”은 당사자가 검사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검사가 소속한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등법원이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함’이라는 의미를 넘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리키는 전문법률용어라 할 수 있으며,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이러한 취지에서 “재정”이라는 용어는 현재대로 사용하되 한자를 함께 쓰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조조문>

제260조(재정신청),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 제262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 재차(再次) → 다시

“재차(再次)”는 명사로서는 ‘두 번째’, 부사로서는 ‘또다시’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와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세 조문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조문들에서의 “재차”는 부사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는 ‘다시’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제214조의3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 제2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다시)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제214조의4 (보증금의 몰수)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다시)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다시) 구속할 때

◆ 전심(前審) → 이전 심급(以前 審級)

“전심(前審)”은 사전적으로 ‘이전에 있던 심리(審理)’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급(審級)제도상 상고심의 경우는 항소심을, 항소심의 경우는 제1심을 의미한다. 한자를 함께 쓰지 않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용어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좀 더 쉬운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전 심급’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제1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이전 심급의)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7. 원판결, 전심(→이전 심급의)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 전원(全員) → 모두

“전원(全員)”은 ‘소속된 인원의 전체’를 의미한다. 그다지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만 법률용어 순화의 관점에서 쉬운 우리말이 있으면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처 법령용어 순화편람은 ‘모두’라는 순화안을 제안하고 있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32조의2 (대표변호인)

-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모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등)

-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모두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참

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모두를)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전촉(轉囑) → 다시 촉탁(囑託)

⇒ “촉탁(囑託)” 참조.

제77조 (구속의 촉탁)

②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다시 촉탁)할 수 있다.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다시 촉탁)할 수 있다.

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다시 촉탁)할 수 있다.

◆ 접근(接近)한 → 가까운

“접근(接近)”은 ‘가까이 다가감’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상 이 말이 쓰이는 경우는 제86조(호송중의 가유치) 단 한 곳인데, 여기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을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가까운’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86조 (호송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 정상(情狀) → 삭제

“정상(情狀)”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의미한다. 주석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상”은 구속·불구속,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자료로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전과, 환경,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의 가중·감경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사항의 예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7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를 들고 있다.

피의자 신문과 피고인 신문은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피의자 신문은 범죄사실과 피의자의 구속·불구속, 기소·불기소를, 피고인 신문은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유죄·무죄, 부과할 형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사정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피의자 신문이나 피고인 신문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굳이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즉 신문의 내용은 피의자 신문의 경우에는 ‘범죄사실 및 필요한 사항’, 피고인 신문의 경우에는 ‘공소사실 및 필요한 사항’ 정도로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참고로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형법상의 “정상”이라는 문언은 ‘사정’이라는 뜻 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형식적 언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문언의 표현을 조금 바꾸는 것을 전제로 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범죄사실 및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7조 (피고인신문의 방식)

①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공소사실 및 필요한 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참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7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본적·주거·직업 및 전과·기소유예·선고유예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유무·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연월일 및 입국목적,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상호·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설립목적 및 그 기구
2. 피의자가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3. 피의자의 훈장·기장·포장·연금의 유무
4. 병역관계
5. 피의자의 환경·교육과 경력·가족상황·재산 및 생활의 정도·종교관계
6. 범죄의 동기와 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결과
7. 피해자의 주거·직업·성명·연령
8.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9.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0.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1. 피해의 상태·손해액·피해회복의 여부·처벌 희망의 유무
12. 피의자의 이익이 될만한 사항
13. 제1호 내지 제12호 사항을 증명할 만한 사항

◆ 정전(正前) → 정면(正面)

형사소송법 제275조 “재판장의 정전(正前)에 좌석(坐席)한다”에서의 “정전(正前)”은 재판장의 ‘정면 앞’을 의미하고, “좌석(坐席)”은 ‘앉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표현은 ‘재판장의 정면에 앉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이다.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③검사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대등하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정면)에 좌석한다.

◆ 정황(情況) → 상황(狀況)

“정황(情況)”은 ‘일의 사정과 상황’을 의미한다. 쉬운 뜻에 비하여 “정황”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어렵고 일상적이지 못하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를 ‘형편’ 또는 ‘상황’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상황’이라는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쓰임상 ‘상황’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계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상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제척(除斥) → 직무집행배제(職務執行排除)

“제척(除斥)”은 사전적으로는 ‘배제하여 물리침’이라는 의미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

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는 규범적 의미를 갖는다. 일본형사소송법(제20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형법 제정시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말로 일반인에게 매우 생소한 용어이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 본문에 나타난 표현대로 '직무집행 배제' 또는 '배제'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이와 같은 견해이다.

제17조 (제척(→직무집행배제)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배제)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25조 (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직무집행배제), 기피, 회피)

-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의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 ②전항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 조각(阻却) → 배제(排除)

“조각(阻却)”은 사전적으로 ‘물리치거나 방해함’의 의미이다.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지만, 형사법령에서는 형법 제310조(명예훼손죄

의 위법성 조각)와 형사소송법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미 있는 일정한 요건을 물리쳐 없앤다는 의미로서 ‘배제’ 또는 ‘제거’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선택하자면 강학상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배제’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견해이다.

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배제)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존치(存置) → 그대로 둬

“존치(存置)”는 사전적으로 ‘제도나 설비 따위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이라는 의미이다.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의 전형적인 예로서,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를 ‘그대로 둬’이라는 용어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그대로 두어야) 한다.

◆ 종결(終結) → 끝맺음

“종결(終結)”은 ‘일을 끝냄’이라는 의미이다. 반드시 한자어로 써야 할 필요는 없는 용어로서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순화안으로 ‘마감’이라는 용어를 제안

하고 있는데, ‘마감’은 ‘정해진 기한의 끝’이라는 의미가 강하므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단순히 ‘끝남’에 중점이 두어진 것이 아니라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강한 단어이므로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이 제안하고 있는 ‘끝맺음’, ‘매듭지음’, ‘마침’ 중 하나인 ‘끝맺음’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피고사건을 끝맺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피고사건을 끝맺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305조 (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끝맺음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제146조 (판결선고 기일)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변론을 끝맺음한 날)로부터 14일내에 하여야 한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변론을 끝맺음한 날)로부터 2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종료(終了) → 끝남

“종료(終了)”는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를 끝마침’이라는 의미이다. 단순히 ‘끝난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우리말 ‘끝남’으로 바꾸

어 쓰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도 ‘끝남’을 순화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19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집행이 끝날 때)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집행이 끝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끝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제192조 (제삼자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끝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끝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290조(증거조사),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제302조(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참조.

◆ 좌석(坐席) → 앉음

형사소송법 제275조 “재판장의 정전(正前)에 좌석(坐席)한다”에서의 “정전(正前)”은 재판장의 ‘정면 앞’을 의미하고, “좌석(坐席)”은 ‘앉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표현은 ‘재판장의 정면에 앉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이다.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③검사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대등하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에 좌석한다(→앉는다).

◆ 종지(終止) → 끝남

“종지(終止)”는 사전적으로 ‘끝마쳐 그침’이라는 의미이다. 한자어를 단순히 풀어쓰더라도 ‘끝남’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끝내다’라는 용어를 제안하면서 ‘정비된 용어만 사용’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끝남’을 제안하고 있다.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제346조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끝남)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죄상(罪狀) → 구체적 범죄사실(具體的 犯罪事實)

“죄상(罪狀)”은 사전적으로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 제98조의 의미상 ‘죄상’은 ‘구체적 범죄사실’ 정도로 바꾸면 적절할 것이다.

제98조 (보석과 보증금)

①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죄상(→구체적 범죄사실)

◆ 죄증(罪證) → 증거(證據)

“죄증(罪證)”은 한자어의 의미 그대로 ‘범죄의 증거’라는 의미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한자어의 의미 그대로 ‘범죄 증거’라고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 “죄증”은 “죄증을 인멸”한다고 표현하는 경우에 주로 쓰인다. 형법은 “인멸(湮滅)”의 객체로 제155조(증거인멸죄)에서는 “증거(證據)”를, 제325조 제2항(준점유강취죄)과 제335조(준강도죄)에서는 “죄적(罪迹)”을 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제70조(구속의 사유)에서 “증거(證據)”를 들고 있으며(제1항 제2호), 형사소송규칙도 제96조의2(체포의 필요),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에서 “증거(證據)”를 들고 있다.

생각건대 “죄증(罪證)”이나 “죄적(罪迹)”은 모두 그 의미가 ‘범죄의 증거’ 또는 ‘범죄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증거(證據)”와 같은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어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이들은 모두 가장 일반적인 용어인 “증거”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견해이다.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제9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죄증을(→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102조 (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① 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 취소하지 못한다.

2. 도망하거나 죄증을(→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④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214조의3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 제2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2. 도망하거나 죄증을(→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주거주(住居主) → 거주자(居住者)

⇒ “가주(家主)” 참조.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거주자),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참고] 제143조 (시각의 제한)

①일출전, 일몰후에는 가주(→거주자),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중(重)한/경(輕)한 → 무거운/가벼운

이 표현들은 무겁고 가벼움을 나타내는 한자 ‘중(重)’과 ‘경(輕)’에 연체형 어미 ‘-한’을 붙인 것이다. 단순히 ‘무거운’ 또는 ‘가벼운’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50조 (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무거운)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62조 (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외에는 그 중한(→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중병(重病) → 중대(重大)한 질병(疾病)

형사소송법상 “중병(重病)”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곳은 제471조 제1항 제5호 한 곳 뿐이다. 이는 일본형사소송법 제482조 제6호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서 알맞은 어감의 우리말로 바꾸어 쓸 필요가 있다. ‘중대한 질병’ 정도의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제471조 (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즉시(卽時)로 → 즉시(卽時)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 때’라는 의미이다. “즉시로”도 이러한 의미임이 분명하지만, 법령용어 통일화의 관점에서 ‘즉시’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 ③전항의 판결은 즉시로(→즉시) 집행할 수 있다.

◆ 즉후(卽後) → 직후(直後)

“즉후(卽後)”는 ‘직후(直後)’와 한자의 의미가 동일하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직후’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견해이다.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 증적(證迹) → 증거(證據)의 흔적(痕迹)

“증적(證迹)”은 사전적으로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이거나 자취’를 말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증거자료’ 또는 ‘흔적’으로 순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증거흔적’으로(‘정비된 용어만 사용’ 의견),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증거자취’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취’와 ‘흔적’은 같은 의미이지만 일상적으로는 ‘흔적’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된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141조와 제211조의 문맥을 고려할 때 ‘증거의 흔적’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본다.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거의 존재를(→증거의 흔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이(→증거의 흔적이) 있는 때

◆ 지장(指章) → 손도장

⇒ “인장(印章)” 참조.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도장)이 없으면 지장(→손도장)으로 한다.

◆ 지체(遲滯)없이 → 즉시(即時)

“지체(遲滯)”는 일반적으로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이라는 의미이지만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을 말한다. “지체 없이”는 일본형사소송법상의 “遲滯なく”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어떠한 일을 이러한 늦어짐 없이 ‘바로’ 또는 ‘즉시’ 한다는 의미이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지체 없이”를 모두 “바로”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지체없이”를 모두 ‘바로’로 바꾸는 경우 어색한 느낌이 드는 조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자어이지만 일상용어로 정착된 ‘즉시(即時)’라

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소송법은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제101조(구속의 집행지), 제172조(법원외의 감정),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제200조의2(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7조(동전),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등에서 이미 “즉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즉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 (구속의 통지)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즉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4조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즉시)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즉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266조(공소장부분의 송달), 제356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401조(정정의 판결),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참조.

◆ 직근(直近) → 바로 위(의)

‘직근(直近)’은 사전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뜻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는 ‘직근’이라는 용어는 예외 없이 ‘상급법원’이라는 어휘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양자를 동시에 적고 풀어 쓰면 ‘해당 법원을 관할하는 바로 위 등급의 법원’이라는 의미가 된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를 ‘가장 가까운’이라는 용어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것인지 관념적인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 ‘직근’은 ‘바로 위(의)’로 풀어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과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또한 이전의 ‘직근’을 ‘바로 위의’로 풀어 사용하고 있다.

제 6 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①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차】

◆ 차회(次回)/전회(前回) → 다음 번/이전 번

“차회(次回)”는 풀어 쓰면 ‘다음 번’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대구(對句)를 이루는 “전회(前回)”는 ‘지난 번’으로 풀어 쓸 수 있을 것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견해이다.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등)

②차회의(→다음 번)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지난 번)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다음 번)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참작(參酌) → 고려(考慮)

“참작(參酌)”은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서 알맞게 고려함’이라는 의미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헤아림’이라는 순화안을 내놓고 있으나,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 및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모두 이를 ‘고려’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은 제51조(양형의 조건)와 제

59조(선고유예)의 “참작”을 ‘고려’로 바꾸고 있고, 형사소송법도 제98조(보석과 보증금),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제165조(증인의 법정외신문)에서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상 “참작”은 ‘고려’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33조 (국선변호인)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고려)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①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첨부(添附) → 붙임

“첨부(添附)”는 사전적으로 ‘안건이나 문서 따위를 덧붙임’이라는 의미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우리말 ‘붙임’으로 바꾸어 쓰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제49조 (검증등의 조서)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붙임) 수 있다.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20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붙여야) 한다.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분을 첨부하여야(→붙여야) 한다.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①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붙여) 7일 이내에 소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수리한 고등검찰청검사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첨부하여(→붙여) 소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2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⑤제1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기록에 재정결정의 재판서의 정본을 첨부하여(→붙여) 7일 이내에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 결정)

②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붙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 **체당금(替當金) → 미리 지출한 비용**

사전적으로 “체당(替當)”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금전이나 재물 따위를 대신 지급하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체당금(替當金)”은 ‘그렇게 하여 지급한 돈’을 의미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곳은 제174조 단 한 곳이다. 동조는 감정인이 감정료뿐 아니라 감정에 소요된 비용을 차후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체당금”은 감정인이 감정과 관련하여 ‘미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와 관련하여 ‘미리 충당한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감정에 들어간 비용’이라는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미리 지급 또는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은 공통되지만, ‘감정에 들어간 비용’보다는 ‘미리 지출한 비용’이 더 넓은 범위를 포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용어가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178조 (여비, 감정료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외에 감정료와 체당금(→미리 지출한 비용)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초본(抄本) → 한자 함께 씀**

⇒ “등본(謄本)” 참조.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抄本)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抄本)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抄本)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抄本)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抄本)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초일(初日) → 첫 날

“초일(初日)”은 한자어의 뜻 그대로 ‘어떤 시기나 기간의 맨 첫 날’을 의미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쉬운 우리말 ‘첫 날’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제66조 (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첫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첫 날)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 촉탁(囑託) → 현재대로

“촉탁(囑託)”은 사전적으로 단순히 ‘일을 부탁하여 맡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사용되는 “촉탁”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관청 사이에서 필요한 사무를 다른 관청에 위임하는 일’을 의미하는 전문법률용어라 할 수 있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이를 일상생활용어인 ‘부탁’으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부탁’이라는 용어가 “촉탁”이 갖는 규범적 의미를 대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는 현재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촉탁”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77조(구속의 촉탁),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는 “전촉(轉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다시 촉탁함’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또한 “촉탁”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두고(제41조, 제139조 등), “전촉”은 ‘다시 촉탁함’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고 있다(제297조 제2항).

<관련조문>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제77조(구속의 촉탁),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제83조(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 제431조(사실조사)

◆ 최초(最初)/최후(最後) · 최종(最終) → 처음/마지막

“최초”나 “최후” 또는 “최종”은 모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용어이다. 그러나 한자어 순화의 관점에서 바꾸어 써도 의미의 변화가 없고 어감이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있으면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쉬운 우리말 ‘처음’과 ‘마지막’으로 바꾸어 쓰면 충분할 것이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 또한 “최초”와 “최종”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의 순화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④최초의(→첫 번째)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마지막)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사건이 마지막으로 계속(係屬)된)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②공범에는 최종(→마지막)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마지막)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마지막)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①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마지막)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36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①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마지막으로)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출정(出定) → 법정(법정)에 출석

⇒ “개정(開廷)” 참조.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법정에 출석)할 수 있

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⑤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65조 (피고인의 출정(→법정 출석))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등)

①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단, 제2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8조 (재심의 심판)

③ 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 취하(取下) → 현재대로

“취하(取下)”는 사전적으로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함’이라는 의미이다. 소송법적으로는 상소나 재심, 정식재판 등 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이를 ‘철회’ 또는 ‘취소’ 등의 용어로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취하”는 이미 사전적 의미 외에 일정한 규

범적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도 같은 견해이다.

<관련조문>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제352조(상소포기등의 방식), 제353조(상소포기등의 관할), 제354조(상소포기후의 재상소의 금지),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56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제458조(준용규정), 제460조(집행지휘), 제490조(신청의 취하)

【타】

◆ 타관(他管) → 다른 관할(管轄)

“타관(他管)”이라는 표현은 형사소송법에서는 제256조(타관송치) 한 곳에서만 쓰인다. “타관송치(他管送致)”는 ‘검사가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넘겨주는 일’을 의미한다. 관행처럼 굳어진 말이지만 “타관”이라는 말이 ‘다른 관할’이라는 문언적 의미 외에 다른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단순히 ‘다른 관할’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제256조 (타관송치(→다른 관할로의 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타인(他人) → 다른 사람

“타인(他人)”은 한자어의 의미 그대로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법령용어 순화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도 같은 견해이다.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다른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다른 사람)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제112조 (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다른 사람)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6조 (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다른 사람)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9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중에는 타인(→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43조(시각의 제한), 제149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6조(전문의 진술) 참조.

◆ 퇴거(退去) → 밖으로 나감

“퇴거(退去)”는 사전적으로 ‘있던 자리에서 옮겨가거나 떠남’ 또는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를 옮겨 감’ 등의 의미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전자는 ‘물러감’으로, 후자는 ‘옮김’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이 표현이 쓰이는 단 한 곳인 제119조(집행중의 출입금지)에서 “퇴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중에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들어온 경우 이를 ‘내보낸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밖으로 나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119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 퇴정(退廷) → 법정에서 나감

⇒ “개정(開廷)” 참조.

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할 때에는 퇴정을(→법정에서 나갈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81조 (피고인의 재정 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법정에서 나가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법정에서 나가는 것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退廷))

①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법정에서 나가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법정에서 나가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법정에서 나간)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330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법정에서 나가게)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退廷)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 특칙(特則) → 특례(特例)

“특칙(特則)”의 한자를 풀어 쓰면 ‘특별한 규칙’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무리한 한자식 조어이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하여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규정 또는 그 법령’을 의미하는 ‘특례(特例)’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과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역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특례))

①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특례))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특례))

제344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규칙 제40조 (서명날인의 특칙(→특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 포함)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 (서명날인의 특칙(→특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불능인 때에는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과】

◆ 파기(破棄) → 현재대로

“파기(破棄)”는 사전적으로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림’이라는 의미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상소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을 의미하는 전문법률용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이 제시하고 있는 ‘깨버림’ 또는 ‘없애버

림’이라는 순화안은 무리한 견해로 보인다. 오히려 1995 법원행정처 검토의견과 같이 현재대로 그냥 두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조조문>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제396조(파기자판),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제446조(파기의 판결),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 파기자판(破棄自判) → 파기(破棄)와 직접판결(直接判決)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기(破棄)”는 전문법률용어로서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자판(自判)”은 무리한 한자식 조어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자판”의 의미가 본문에서 쉽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한자를 함께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있으나, 바꾸어 쓸만한 쉬운 표현이 있다면 굳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제호의 의미를 파악하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396조의 제호는 ‘파기와 직접판결’ 정도로 바꾸면 쓰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제396조 (파기자판(→파기와 직접판결))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하】

◆ 한(限)하여 → (경우에)만

“한(限)하여”는 일본어의 ‘限(かぎ)て’라는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표현으로서, 우리말로는 ‘-(경우에)만’ 정도의 의미이므로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않는 경우에만) 법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①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명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두 번)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② 전항 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있는 것인 경우에만)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제109조 (수색)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있는 경우에만) 수색할 수 있다.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삭제)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삭제)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제191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제217조(동전),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번호사),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제316조(전문의 진술), 제329조(공소 취소와 재기소), 제415조(재항고),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참조.

◆ 한도(限度) → 범위 안

“한도(限度)”의 원래 의미는 ‘일정한 정도 또는 한정된 정도’를 의미하지만, 형사소송법상 “한도”는 ‘무엇을 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범위 안’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범위 안)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범위 안)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80조 (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범위 안)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제481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범위 안)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 함에는 → 하는 경우에는

“함에는”이라는 표현은 일본어 ‘-をするには’라는 표현을 직역한 것이다. 우리말의 어법에 맞게 ‘-하는 경우에는’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①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선고하는 경우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구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집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97조(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13조(압수·수색영장),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72조(법원외의 감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219조(준용규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제273조(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제406조(항고의 절차),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제471조(동전) 참조.

◆ 합의법원(合議法院) → 합의부(合議部)

“합의법원(合議法院)”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합의부(合議部)’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도 같은 견해이다.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① 합의법원의(→합의부)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관사 또는 단독관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해(害)하다 → 해치다

“해(害)하다”는 표현은 같은 뜻의 일본어 ‘害する’라는 표현을 직역한 것이다. 우리말인 ‘해치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제110조 (군사상비밀과 압수)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 (공무상비밀과 압수)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6조 (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해치는)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해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해치는)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제471조(동전) 참조.

◆ 해득(解得) → 알아 봄

“해득(解得)”의 사전적 의미는 ‘뜻을 깨쳐 앎’이다. 법제처 법령용어 순화편람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게 이를 ‘깨우쳐 앎’ 또는 ‘알음’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58조의 취지는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일정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에 삭제한 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원래 있었던 글자의 모양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해득할 수 있도록”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도로 바꾸어 쓰면 좋을 것이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도 같은 견해이다.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알아볼)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해태(懈怠) → 게을리 함

“해태(懈怠)”는 사전적으로 ‘게을리 함’의 의미이다. 국회 법률용어 표준화기준, 법원 한자어순화지침 및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 또한 사전적 의미의 우리말 ‘게을리 함’으로 풀어쓰는데 동의하고 있다.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게으름’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또는 형사소송규칙 제21조(감독)의 문맥을 볼 때 이는 ‘게을리 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한 사람이 게을리 하여 고소기간을 넘긴 것은)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21조 (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게을리 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행(行)함 → 수행(遂行)함, 함

“행(行)함”이라는 표현은 일정한 일을 (수행)한다는 의미의 일본어 ‘行(おこな)う’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함’ 또는 ‘수행(遂行)함’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행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수행함”으로 바꾸어 써도 의미의 차이가 없다. 형사소송법도 제246조(국가소추주의)에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의 “행할”을 ‘행사할’로,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와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2항 제10호, 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행한” 또는 “행하는”은 단순히 ‘한’ 또는 ‘하는’으로,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제313조(진술서등),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6조(전문의 진술) 등에서의 “행하여진”은 ‘이루어진’으로 바꾸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제 3 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직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수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 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행사할) 수 없는 때

제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수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한) 자와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판을 행(→수행)한 일시와 법원
10. 공판정에서 행한(→한) 검증 또는 압수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이루어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참고]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그 밖에 제17조(제척의 원인),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97조(특별사법경찰

관리), 제256조의2(군검찰관에의 사건송치),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제313조(진술서등),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6조(전문의 진술), 제338조(상소권자) 참조.

◆ 허부(許否) →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

“허부(許否)”는 한자가 의미하는 그대로 ‘허가 여부’를 의미하는 말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부”는 ‘-한지 아닌지’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허부”는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로 바꾸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원 한자어순화지침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 또한 이러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허가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5조 (보석등의 결정기한)

보석의 청구 또는 검사 아닌 자의 구속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 또는 법 제97조제1항의 단서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의 허부 또는 구속취소여부(→허가할 것인지 아닌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허위(虛僞) → 거짓

“허위(虛僞)”는 사전적으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 즉 ‘거짓’을 의미한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과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허위”를 ‘거짓’으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실제로 “허위”를 “거짓”으로 바꾸어 쓰고 있으며(제300조, 제301조, 제370조 등), 형사소송법도 제157조(선서의 방식) 및 제170조(선서)에서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고 있다.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다른 “허위”라는 표현도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같은 이유에서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제156조(무고),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제217조(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업무방해),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에서의 “허위” 또한 ‘거짓’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거짓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제170조 (선서)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거짓인) 것이 증명된 때

◆ 현상(現狀) → 현재(現在)의 상태(狀態)

“현상(現狀)”은 사전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한자를 함께 쓰지 않는 경우 이는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

물의 모양과 상태’를 의미하는 ‘현상(現象)’ 등과 혼동될 수 있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은 용어를 축약하여 법문에 사용함으로써 표현이 어색하거나 원래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이를 풀어 쓰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현상(現狀)”의 경우 ‘현재의 상태’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제49조 (검증등의 조서)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현재의 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 호창(呼唱) → 부름

“호창(呼唱)”은 사전적으로 ‘큰 소리로 부름’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소송법상 이 용어가 쓰이는 곳은 제211조 한 곳인데, 여기서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몇 가지 사유를 볼 때 “호창(呼唱)되어”는 범행 현장에서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정황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과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소리 높여)부름’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으나,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이 제시한 바와 같이 단순히 ‘부름’이라고 바꾸어 쓰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때

◆ 환부(還付) → 반환(返還), 돌려줌

환부(還付)는 사전적으로 ‘도로 돌려 줌’이라는 의미로서 ‘환급(還給)’ 또는 ‘반환(返還)’과 동일한 의미이다. 국회 법률용어표준화기준

은 ‘환급’을,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반환’을, 법제연구원 형사법령용어순화연구는 ‘반환’과 ‘돌려줌’을 선택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인 용어로서는 ‘돌려줌’이라는 용어가 타당할 것이고, 축약명사형의 한자어로는 환급과 반환 중에서 ‘반환’이 좀 더 일상적인 용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돌려 줌’ 또는 ‘반환’이라는 용어를 일률적으로 고집하기보다는 서술형으로 사용할 때는 ‘돌려 줌’이라는 표현을, 축약명사형으로 사용할 때에는 ‘반환’이라는 표현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제104조 (보증금의 환부(→반환))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환부하여야(→돌려주어야) 한다.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반환), 가환부(→임시반환))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돌려주어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임시로 돌려줄)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임시로 돌려주어야) 한다.

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반환))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돌려줄)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돌려줄) 수 있다.

제217조 (동전)

②전조제1항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돌려주어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반환))

- 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돌려줄)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돌려준다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가환부한(→임시로 돌려준)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돌려준다는)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03조 (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 ②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반환)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6조 (준항고)

- 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반환)에 관한 재판

제417조 (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반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5조 (위조등의 표시)

- ①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돌려주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86조 (환부(→반환)불능과 공고)

- ① 압수물의 환부를(→압수물을 돌려)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돌려달라는)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 환송(還送) → 현재대로

⇒ “이송(移送)” 참조.

<참조조문>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 흠결(欠缺) → 흠

“흠결(欠缺)”은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용어로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흠과 결함’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편람은 ‘흠’, ‘부족’ 또는 ‘모자람’ 등의 용어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법원 한자어순화지침은 ‘흠’이라는 표현을 제안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이 표현이 쓰이는 곳은 제96조(자료의 제출등) 한 곳인데, 여기서 “흠결”은 ‘흠’으로 바꾸어 쓰면 적절할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 (자료의 제출등)

④판사는 영장 청구서의 기재 사항에 흠결(→흠)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편 총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법원의 관할</p> <p>제 1 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p> <p>제 2 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p> <p>제 3 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행)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p> <p>제 4 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이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 5 조 (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p> <p>제 6 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 7 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편 총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법원의 관할</p> <p>제 1 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p> <p>제 2 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을 위반하여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p> <p>제 3 조 (관할구역V밖에서의 집행)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관할구역V밖에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수명법관도 제1항에 따른다.</p> <p>제 4 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나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의 대한민국V선박V안에서 범한 죄는 제1항에 규정한 곳 이외에 선적지(船籍地) 또는 범죄V후의 선착지(船着地)로 한다. ③국외의 대한민국V항공기V안에서 범한 죄도 제2항에 따른다.</p> <p>제 5 조 (토지관할 합치기)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이 관련된 경우, 한 사건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p> <p>제 6 조 (토지관할의 심리 합치기)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한 법원이 합쳐서 심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p> <p>제 7 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p>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p>	<p>이 다른 여러 관련사건이 같은 법원에 계속(係屬)되고 합쳐서 심리할 필요가 없으면, 법원은 사건을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결정을 할 수 있다.</p>
<p>제 8 조 (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p>	<p>제 8 조 (사건의 직권이송) ①피고인이 관할구역V안에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같은 급의 법원으로 보내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 9 조 (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p>	<p>제 9 조 (사물관할의 합치기) 사물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이 관련된 경우, 법원V합의부는 합쳐서 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V단독판사에게 이송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p>
<p>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p>	<p>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이 다른 여러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V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係屬)된 경우, 합의부는 단독판사의 사건을 합쳐서 심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p>
<p>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여럿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여럿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p>	<p>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한 명이 범한 여러 죄 2. 여럿이 함께 범한 죄 3. 여럿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숨김죄·증거인멸죄·거짓증언죄·거짓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本犯)의 죄</p>
<p>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p>	<p>제12조 (같은 사건과 여럿의 소송계속)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다른 여럿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 법원V합의부가 심리·재판한다.</p>
<p>제13조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권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p>	<p>제13조 (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럿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리·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p>

<p>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p>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p>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①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p> <p>제 2 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p> <p>제1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 	<p>리·재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p> <p>제14조 (관할지정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V있는 제1심V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법원에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 <p>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바로 위의 법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는 경우 <p>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면,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바로 위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면,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알려야 한다.</p> <p>제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가졌음이 판명된 경우,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V전에 수행한 소송행위는 이송V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p> <p>제 2 장 법원직원의 직무집행배제, 기피, 회피</p> <p>제17조 (직무집행배제의 사유)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호주·가족이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
---	--

<p>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p> <p>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해당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p> <p>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p> <p>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p>	<p>있던 사람인 경우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후견감독인인 경우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이 된 경우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이전 심급의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p> <p>제18조 (기피의 사유와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는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제17조 각V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①합의부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해당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소명(疏明)하여야 한다.</p> <p>제20조 (기피신청의 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신청을 이유V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p>
---	--

<p>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p> <p>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p> <p>제24조 (회피의 원인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p> <p>제25조 (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소송행위의 대리 및 보조</p> <p>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p>	<p>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p> <p>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23조 (기피신청의 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 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p> <p>제24조 (회피의 사유 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는 회피규정에 따른다.</p> <p>제25조 (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직무집행배제, 기피, 회피) ①이 장은 제17조 제7호를 제외하고, 법원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 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사람의 소속법원 또는 소속법관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소송행위의 대리 및 보조</p> <p>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p>
--	--

<p>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여럿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p> <p>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p> <p>제29조 (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2)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는 각자가 대표한다.</p> <p>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①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p> <p>제29조 (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인은 독립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 4 장 변 호</p>	<p>제 4 장 변 호</p>
<p>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3)</p> <p>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p>	<p>제30조 (변호인 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32조 (변호인 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함께 이름을</p>

<p>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p> <p>제32조의2 (대표변호인) ①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33조 (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p>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p> <p>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p>	<p>쓰고 도장을 찍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p> <p>제32조의2 (대표변호인) ①여러 명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③대표변호인은 세 명을 넘을 수 없다.</p> <p>④대표변호인에 대한 알람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p> <p>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피의자에게 여러 명의 변호인이 있고,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따른다.</p> <p>제33조 (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4. 피고인이 듣고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자인 경우 5. 피고인이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6.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p>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p> <p>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p>
---	--

<p>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p> <p>제35조 (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p> <p>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4조 (피고인·피의자와의 만남·교통, 진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만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p> <p>제35조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p> <p>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 5 장 재 판</p>	<p>제 5 장 재 판</p>
<p>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①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p> <p>②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p> <p>③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p> <p>④전항의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p>	<p>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①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p> <p>②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의 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p> <p>③결정 또는 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조사는 합의부원에게 명령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p>
<p>제38조 (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p>	<p>제38조 (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로 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알리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에 적는 것만으로 할 수 있다.</p>
<p>제39조 (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p>	<p>제39조 (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단, 상소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p>
<p>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②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③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p>	<p>제40조 (재판서에 적어야 할 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사람의 성명·연령·직업과 주거를 적어야 한다.</p> <p>②재판을 받는 대상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적어야 한다.</p> <p>③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p>

<p>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41조 (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p> <p>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43조 (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p> <p>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할 때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p>	<p>관직·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p> <p>제41조 (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을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p> <p>제42조 (재판의 선고, 알림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알림은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따라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謄本)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43조 (앞과 같음) 재판의 선고 또는 알림은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p> <p>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필요로 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필요로 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謄本) 또는 초본(抄本)을 재판을 선고 또는 알린 때부터 10일 안에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45조 (재판서의 등본 및 초본의 청구) 피고인 등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내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謄本) 또는 초본(抄本)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46조 (재판서의 등본 및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謄本) 또는 초본(抄本)은 원본(原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등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p>
--	---

제 6 장 서 류	제 6 장 서 류
<p>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p> <p>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 ①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p>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p> <p>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p> <p>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49조 (검증등의 조서)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을 시작하기 전에는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다.</p> <p>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 ①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에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p>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적힌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물어야 한다.</p> <p>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p> <p>⑤신문에 참여한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적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p> <p>⑥제5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할 수 있다.</p> <p>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걸침도장을 찍은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p> <p>제49조 (검증 등의 조서) ①검증·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림이나 사진을 붙일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적어야 한다.</p>

<p>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50조 (각종 조서에 적어야 할 요건) 제49조와 제50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수행한 사람과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이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서기관 또는 서기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p>	<p>제51조 (공판조서에 기록요건)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그 밖에 모든 소송절차를 적어야 한다. 1. 공판의일시와 법원 2. 법관·검사·서기관 또는 서기의 관직과 성명 3. 피고인·대리인·대표자·변호인·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 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 제2항에 적은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가 될 서류 및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적도록 명령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적도록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마지막 진술을 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등의 재판을 선고 또는 알린 사실</p>
<p>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p>	<p>제52조 (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 이외의 증인신문조서는</p>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4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적어야 한다.</p>
<p>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등)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법관 모두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등)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후 5일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차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p>	<p>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5일 안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번 공판기일에는 지난 번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적힌 대로 알려야 한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적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할 수 있다.</p>
<p>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p>	<p>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읽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청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p>
<p>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p>	<p>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적힌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다.</p>

<p>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①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57조 (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서명날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경하지 못한다.</p> <p>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p> <p>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송 달</p> <p>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p>	<p>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① 법원은 피고인·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증인 등의 사람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속기나 녹음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속기나 녹음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변호인 또는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p> <p>③제1항의 신청에 따라 속기나 녹음을 한 경우, 신청인은 실제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테이프의 등본(謄本) 또는 초본(抄本)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57조 (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관공서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②서류에는 결침도장을 찍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서명날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58조 (공무원의 서류) ①서류를 작성하는 공무원은 문자를 수정하지 못한다.</p> <p>②삽입·삭제 또는 칸 밖에 적는 경우, 적은 곳에 도장을 찍고 글자의 수를 적어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알 수 있도록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p> <p>제59조 (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송 달</p> <p>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피고인·대리인·대표자·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p>
---	--

<p>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p> <p>③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p> <p>④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가 없으면,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있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함께 이름을 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보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본다.</p> <p>③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의 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신체가 구속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p>
<p>제61조 (우체에 부치는 송달) ①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p> <p>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p>	<p>제61조 (우편으로 보내는 송달) ①주거·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p> <p>②서류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p>
<p>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p>	<p>제62조 (검사에게 보내는 송달) 검사에게 보내는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보내야 한다.</p>
<p>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p> <p>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p>	<p>제63조 (공시송달의 사유) ①피고인의 주거·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p> <p>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p>
<p>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p> <p>②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p> <p>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p>	<p>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p>②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관에 공시하여야 한다.</p> <p>③법원은 제2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p>④첫 번째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단, 두 번째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p>
<p>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p>	<p>제65조 (민사소송법에 따름) 서류의 송달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p>

<p>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기 간</p> <p>제66조 (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p> <p>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p>	<p>송법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기 간</p> <p>제66조 (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은 시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즉시부터 시작하고, 일·월 또는 년의 계산은 첫 날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첫 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 ②년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사람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장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p> <p>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p> <p>제69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p> <p>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장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p> <p>제68조 (출석요구) 법원은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69조 (구속의 정의) 이 법에서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p> <p>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②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p>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수 없다.</p> <p>제7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 한다.</p> <p>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p> <p>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제74조 (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76조 (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속할 수 없다.</p> <p>제71조 (구인의 효력) 법원에 인치한 구인 피고인에게 구금의 이유가 없으면,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석방하여야 한다.</p> <p>제72조 (구속과 이유의 알림)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p> <p>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제74조 (출석요구서의 방식) 출석요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상·체격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하면, 그 주거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p> <p>제76조 (출석요구서의 송달) ①출석요구서는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음 번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령한 경우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제2항의 출석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p>
--	--

<p>④구급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리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p> <p>⑤피고인이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p> <p>제77조 (구속의 촉탁) ①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p> <p>②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p> <p>③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④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p> <p>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p> <p>제79조 (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p> <p>제80조 (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p> <p>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p> <p>②전항 단행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p> <p>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p>	<p>④구급된 피고인은 교도관리에게 알려서 출석을 요구한다.</p> <p>⑤피고인이 교도관리로부터 출석요구의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p> <p>제77조 (구속의 촉탁) ①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p> <p>②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안에 없는 경우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p> <p>③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④제75조는 제3항의 구속영장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8조 (촉탁에 따른 구속의 절차) ①제77조의 경우에는 촉탁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안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p> <p>제79조 (출석·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피고인이 출석하거나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p>제80조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처분)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제76조·제77조와 제79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합의부원이 처분하게 할 수 있다.</p> <p>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p> <p>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밖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p> <p>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p>
--	---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p> <p>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p> <p>제8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p> <p>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p> <p>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p> <p>제86조 (호송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p> <p>제87조 (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p>	<p>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리가 집행한다.</p> <p>제82조 (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여러 명에게 내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적어야 한다.</p> <p>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p> <p>제84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수사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불분명하면, 재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p> <p>제85조 (구속영장 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등의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77조 제3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집행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p> <p>제86조 (호송중의 임시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p> <p>제87조 (구속의 알림) ①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p>
--	---

<p>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p> <p>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p> <p>제90조 (변호인의 의뢰) ①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p> <p>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p> <p>②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p> <p>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p>	<p>제2항에 규정한 사람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피고사건명·구속의 일시와 장소·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p> <p>②제1항의 알림은 즉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알림)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만남, 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p> <p>제90조 (변호인 선임의 의뢰) ①구속된 피고인은 법원·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신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p> <p>제91조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 및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하거나, 서류 등의 물건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주고 받는 물건을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단, 의류·양식·의료품은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p> <p>제92조 (구속기간과 연장)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두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p> <p>②연장한 기간도 2개월로 한다.</p> <p>③제22조·제298조 제4항·제3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가</p>
---	---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정지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93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는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9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p>제96조 (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97조 (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p>	<p>정지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p> <p>제93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사람은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9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 3.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피고인이 피해자·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p>제96조 (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97조 (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검사가 3일 안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석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p>
---	---

<p>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p> <p>③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98조 (보석과 보증금) ①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의 성질, 죄상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 <p>②법원은 피고인의 자산정도로는 납입하기 불가능한 보증금액을 정할 수 없다.</p> <p>제99조 (보석의 조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p> <p>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 ①보석의 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다.</p> <p>②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p> <p>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p> <p>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p> <p>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p>	<p>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것인 경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1항과 같다.</p> <p>③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98조 (보석과 보증금) ①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의 성질, 구체적 범죄사실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과 자산 <p>②법원은 피고인의 자산정도로는 낼 수 없는 보증금액을 정할 수 없다.</p> <p>제99조 (보석의 조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p> <p>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 ①보석의 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낸 후에만 집행할 수 있다.</p> <p>②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사람이 보증금을 내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p> <p>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이외의 사람의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내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야 한다.</p> <p>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④헌법 제44조에 따라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p> <p>⑤제4항의 석방요구를 받은 검찰총장</p>
---	--

<p>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02조 (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①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 취소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p>②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p> <p>제103조 (유죄판결확정과 보증금의 몰취)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p> <p>제104조 (보증금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p> <p>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p>	<p>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p> <p>제102조 (보석 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수) ①피고인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0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망한 경우 2.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피해자·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주거의 제한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p>②법원은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p> <p>제103조 (유죄판결 확정과 보증금의 몰수) 보석된 사람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p> <p>제104조 (보증금의 반환)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몰수하지 않은 보증금을 청구한 날부터 7일 안에 돌려주어야 한다.</p> <p>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인 사건의 구속기간의 연장·구속의 취소·보석·구속의 집행정지와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p>
---	--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장 압수와 수색
<p>제106조 (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p> <p>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①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p> <p>②전항 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p> <p>③전2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08조 (임의제출물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p> <p>제109조 (수색)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p> <p>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p> <p>제110조 (군사상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p> <p>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p>	<p>제106조 (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p> <p>제107조 (우편물의 압수) ①법원은 발송하거나 또는 발송된 피고인의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관공서 등이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p> <p>②제1항 이외의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관공서 등이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만 제출을 명령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p> <p>③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은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p> <p>제108조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남겨 놓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p> <p>제109조 (수색)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체·물건·주거 등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p> <p>②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물건·주거 등의 장소는 압수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색할 수 있다.</p> <p>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하여야 한다.</p>

<p>제111조 (공무상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p> <p>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p>	<p>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의 비밀임을 신고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은 소속관공서 또는 해당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할 수 있다.</p> <p>②소속관공서 또는 해당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하여야 한다.</p>
<p>제112조 (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12조 (업무상 비밀과 압수)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대서업자·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약종상·조산사·간호사·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으로 다른 사람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13조 (압수·수색영장) 공판정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제113조 (압수·수색영장) 공판정 밖의 압수 또는 수색은 영장을 발부하여 하여야 한다.</p>
<p>제114조 (영장의 방식) ①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p>	<p>제114조 (영장의 방식) ①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적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②제75조 제2항은 제1항의 영장규정에 따른다.</p>
<p>제115조 (영장의 집행) ①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p> <p>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p>	<p>제115조 (영장의 집행) ①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제83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규정에 따른다.</p>
<p>제116조 (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p>	<p>제116조 (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p>

<p>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117조 (집행의 보조)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p> <p>제118조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p> <p>제119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①압수·수색영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p> <p>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p> <p>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p> <p>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p>	<p>야 하며 처분 받은 사람의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117조 (집행의 보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하면,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118조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p> <p>제119조 (집행 중의 출입금지) ①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집행이 끝날 때까지 관리자를 붙일 수 있다.</p> <p>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잠금장치를 열거나 개봉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p> <p>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p> <p>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알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제121조에 규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단, 제121조에 규정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관공서, 군사용의 항공기·선박 또는 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다른 사람의 주거, 관리자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에 사는 사람 또는 지방공</p>
--	--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p> <p>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내에 한한다.</p> <p>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p> <p>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p> <p>제131조 (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p>	<p>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경우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록이 없으면, 해뜨기 전과 해진 후에는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 관리자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p> <p>제126조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도박 등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 2. 여관·음식점 등 야간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된 시간안에 한한다.</p> <p>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이 끝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관리자를 둘 수 있다.</p> <p>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으면 그러한 취지의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p> <p>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은 관리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p> <p>제131조 (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멸실 또는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32조 (압수물의 금전보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p>
--	---

<p>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p> <p>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p> <p>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p> <p>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p> <p>제135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예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p> <p>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p> <p>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서기관 또는 서기가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p> <p>제138조 (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의</p>	<p>는 매각하여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p> <p>제133조 (압수물의 반환·임시반환)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을 끝맺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돌려주어야 하고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임시로 돌려줄 수 있다.</p> <p>②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임시로 돌려주어야 한다.</p> <p>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 반환)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을 끝맺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p> <p>제135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알림)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결정은 검사·피해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p> <p>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p> <p>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안에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p> <p>③수명법관·수탁판사가 하는 압수 또는 수색은 법원이 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137조 (구속영장의 집행과 수색) 검사·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 관리자 있는 가옥·건조물, 항공기·선박 또는 차량 안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p> <p>제138조 (따름규정) 제119조·제120조·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제137조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리·법원의 서기</p>
--	---

<p>서기관 또는 서기의 수색에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검 증</p> <p>제139조 (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p> <p>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p> <p>제143조 (시각의 제한) ①일출전, 일몰후에는 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일몰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제144조 (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p>	<p>관 또는 서기의 수색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검 증</p> <p>제139조 (검증) 법원은 사실발견에 필요하다면, 검증을 할 수 있다.</p> <p>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검사·시체의 해부·분묘의 발굴·물건의 파괴와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당하는 사람의 성별·연령·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42조 (신체검사와 출석요구)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사람을 법원 등 지정한 장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43조 (시각의 제한) ①해뜨기 전·해진 후에는 거주자·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검증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 관리자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단, 해가 뜬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②해지기 전에 검증에 착수한 경우에는 해진 후에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p> <p>제144조 (검증의 보조) 검증을 하는데 필</p>
--	--

<p>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p> <p>제145조 (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령할 수 있다.</p> <p>제145조 (따름규정) 제110조·제119조부터 제123조까지·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장 증인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장 증인신문</p>
<p>제146조 (증인의 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p>	<p>제146조 (증인의 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p>
<p>제147조 (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p> <p>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p>	<p>제147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사실을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사실로 신고하면, 소속관공서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있어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p> <p>②소속관공서 또는 해당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한다.</p>
<p>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p>제148조 (친족 등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족·호주·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p>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대서업자·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약종상·조산사·간호사·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사실로서 다른 사람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p>
<p>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p>	<p>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p>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p> <p>제151조 (불출석과 과태료등) ①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p> <p>제153조 (준용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p> <p>제154조 (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p> <p>제155조 (준용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p> <p>제156조 (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57조 (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p> <p>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p> <p>제159조 (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p>	<p>부하는 사람은 거부사유를 소명(疏明)하여야 한다.</p> <p>제151조 (불출석과 과태료 등) ①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152조 (출석요구 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은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p> <p>제153조 (따름규정) 제73조·제74조·제76조는 증인의 출석요구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54조 (구내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신문)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p> <p>제155조 (따름규정) 제73조·제75조·제77조·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은 증인의 구인규정에 따른다.</p> <p>제156조 (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57조 (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로 하여야 한다. ②선서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읽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대신한다. ④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p> <p>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게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p> <p>제159조 (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여야 한다.</p>
---	--

<p>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p> <p>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p> <p>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p> <p>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할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p> <p>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1. 16세 미만의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p> <p>제160조 (증언거부권의 알립) 증인이 제148조·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제161조 (선서·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p> <p>제162조 (개별신문과 대면신문)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을 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않는 증인이 법정 안에 있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명하여야 한다. ③ 필요하면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면신문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p> <p>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신문권) 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	---

<p>제164조 (신문의 청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삭 제</p> <p>제165조 (증인의 법정외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p> <p>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p> <p>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168조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장 감 정</p> <p>제169조 (감정) 법원은 학식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164조 (신문의 청구) ①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고 증인을 신문한 경우 피고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불이익한 증언이 진술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삭 제</p> <p>제165조 (증인의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직업·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이외의 장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p> <p>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이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인할 수 있다.</p> <p>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안에 없는 경우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168조 (증인의 여비·일당·숙박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따라 여비·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장 감 정</p> <p>제169조 (감정) 법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령할 수 있다.</p>
--	--

<p>제170조 (선서) ①감정인에게는 감정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④제157조 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p> <p>제171조 (감정보고)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p> <p>제172조 (법원의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의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p>	<p>제170조 (선서) ①감정인은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로 하여야 한다. ③선서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④제157조 제3항·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규정에 따른다.</p> <p>제171조 (감정보고) ①감정의 과정과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p> <p>제172조 (법원 이외의 장소에서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이외의 장소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내줄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끝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유치를 하려면,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유치에 필요하면,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그 밖의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관리를 명령할 수 있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규정에 따른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예외로 한다.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가 포함된 계산에서는 구속으로 본다.</p>
--	--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제172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p> <p>②전항의 경우에 전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p> <p>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③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④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신문권)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복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p> <p>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p> <p>제175조 (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p> <p>제176조 (당사자의 참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p> <p>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72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p> <p>②제1항의 경우 제172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p> <p>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사람의 주거, 관리자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 안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시체의 해부·분묘의 발굴·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죄명·들어갈 장소·검사할 신체·해부할 시체·발굴할 분묘·파괴할 물건·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적은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③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p> <p>⑤제141조와 제143조는 제1항의 경우에 따른다.</p> <p>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신문권) ①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복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p> <p>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질문할 수 있다.</p> <p>제175조 (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p> <p>제176조 (당사자의 참여) ①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p> <p>②제122조는 제1항의 경우에 따른다.</p>
--	---

<p>제177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한 외에는 감정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178조 (여비, 감정료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79조 (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p> <p>제179조의2 (감정의 촉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p>	<p>제177조 (따름규정) 제12장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178조 (여비, 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일당·숙박료 이외에 감정료와 미리 지출한 비용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79조 (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따라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전장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79조의2 (감정의 촉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공서·학교·병원 등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해당 관공서·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장 통역과 번역</p>	<p>제14장 통역과 번역</p>
<p>제180조 (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81조 (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p> <p>제182조 (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83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p>	<p>제180조 (통역)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81조 (듣기 말하기 장애인의 통역) 듣기 말하기 장애인의 진술은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할 수 있다.</p> <p>제182조 (번역) 국어가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83조 (따름규정) 제13장은 통역과 번역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15장 증거보전</p>	<p>제15장 증거보전</p>
<p>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p>	<p>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p>

<p>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p> <p>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p> <p>제185조 (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p>	<p>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있다.</p> <p>③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야 한다.</p> <p>제185조 (서류의 열람 등)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84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p>
<p>제16장 소송비용</p>	<p>제16장 소송비용</p>
<p>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피고인에게 책임지을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낼 수 없으면 예외로 한다.</p> <p>②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188조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188조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189조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p>	<p>제189조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p>
<p>제190조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①검사</p>	<p>제190조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 ①검사</p>

<p>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p> <p>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p> <p>제192조 (제삼자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194조 (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편 제 1 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수 사</p> <p>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p> <p>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p>	<p>아닌 사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피고인 아닌 사람이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p> <p>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만 불복할 수 있다.</p> <p>제192조 (제3자 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피고인 아닌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않은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마지막으로 계속(係屬)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194조 (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계산하여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편 제 1 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수 사</p> <p>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p> <p>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p>
---	---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p> <p>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p> <p>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p> <p>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p> <p>제198조 (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p> <p>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p> <p>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통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p>	<p>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p> <p>②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p> <p>③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람 이외에 법률로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p> <p>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과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p> <p>제198조 (주의사항) 검사·사법경찰관리,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 있는 사람은 비밀을 지키고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수사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한 번 이상 관할구역 안에 있는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을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p> <p>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p> <p>②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공서 등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알림)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p>
--	---

<p>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p> <p>②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제200조의2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p> <p>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p> <p>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p> <p>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p>	<p>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p> <p>②제1항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제200조의2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에 규정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단,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에 규정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p> <p>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단,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내준다.</p> <p>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p> <p>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제201조의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p> <p>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p>
---	---

<p>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p> <p>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p>	<p>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한 사정으로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사정이라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p> <p>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적어야 한다.</p>
<p>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p> <p>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20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p>	<p>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p> <p>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0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붙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영장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p>
<p>제200조의5 (준용규정)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 제4항 및 제10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p>	<p>제200조의5 (따름규정) 제72조·제75조·제81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제82조·제83조·제85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제86조부터 제91조까지·제93조·제101조 제4항 및 제102조 제1항</p>

<p>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p> <p>제201조 (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p> <p>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p> <p>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201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p>	<p>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따른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본다.</p> <p>제201조 (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단,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p> <p>②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내준다.</p> <p>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p> <p>제201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피</p>
--	--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5)</p> <p>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제1항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p> <p>③제1항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p> <p>④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있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p> <p>⑤검사와 변호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⑥제1항 및 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지방법원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⑦지방법원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구속영장청구에 기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⑧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⑨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및 제88조 내지 제</p>	<p>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제1항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것인지 아닌지를 적어야 한다. 단,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적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③제1항 이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p> <p>④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알려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p> <p>⑤검사와 변호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⑥제1항 및 제3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등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⑦지방법원 판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구속영장청구에 터잡아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⑧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구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p> <p>⑨제71조·제72조·제75조·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제85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제86조·제87조 제1항 및 제</p>
---	--

<p>9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p> <p>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p> <p>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제3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p> <p>제204조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06조 삭 제</p> <p>제207조 삭 제</p> <p>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p>	<p>88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은 제3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따른다.</p> <p>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p> <p>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경우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p> <p>제203조의2 (구속기간에 포함된 계산)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 제3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시작한다.</p> <p>제204조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알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않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즉시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을 한 번 더 연장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06조 삭 제</p> <p>제207조 삭 제</p> <p>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따라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한 개의 목적을 위</p>
--	--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p> <p>제209조 (준용규정)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p> <p>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p> <p>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p> <p>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p> <p>제212조의2 삭제</p> <p>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p>	<p>하여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수단과 결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행위는 같은 범죄사실로 본다.</p> <p>제209조 (따름규정) 제71조·제72조·제75조·제81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제82조·제83조·제85조부터 제91조까지·제93조·제101조 제1항·제102조 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규정에 따른다.</p> <p>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밖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이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200조의3·제212조·제214조·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따른 수사를 하는데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p> <p>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경우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3. 신체 또는 의복에 현저한 증거의 흔적이 있는 경우 4. 누구냐는 질문에 도망하려 하는 경우</p> <p>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p> <p>제212조의2 삭제</p> <p>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체포자의 성명·주거·체포의</p>
--	---

<p>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삭 제</p> <p>제213조의2 (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p> <p>②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 <p>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p>	<p>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자에게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삭 제</p> <p>제213조의2 (따름규정) 제72조·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및 제200조의2 제5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넘겨받은 경우에 따른다.</p> <p>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212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청구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3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같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경우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가 차례로 하는 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 <p>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p> <p>④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낼 것을 조건으</p>
--	---

<p>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p>⑤ 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p> <p>⑥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⑦ 제2항과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p> <p>⑧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⑨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⑩ 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⑪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제3항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⑫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 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214조의3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 제21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p>	<p>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p>⑤ 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의무 등 적당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p> <p>⑥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낼 것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 따른다.</p> <p>⑦ 제2항과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p> <p>⑧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⑨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p> <p>⑩ 제3항의 심문을 할 때, 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등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⑪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제3항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단,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이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⑫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 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p> <p>제214조의3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 제21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석</p>
---	--

<p>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p> <p>②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p>제214조의4 (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p>②법원은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p> <p>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p> <p>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p>	<p>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p> <p>②제2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망한 경우 2.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4. 주거의 제한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p>제214조의4 (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미 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석방된 사람을 제214조의3 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다시 구속하는 경우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석방된 사람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는 경우 <p>②법원은 제2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석방된 사람이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p> <p>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p> <p>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p>
--	--

<p>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p> <p>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p>②전항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p> <p>제217조 (동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00조의4에 규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p> <p>②전조제1항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p> <p>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p> <p>제219조 (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p>	<p>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p> <p>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의 주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 안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p>②제1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따른다.</p> <p>③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한 사정으로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p> <p>제217조 (앞과 같음)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체포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00조의4에 규정한 기간 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p> <p>②제216조 제1항 제2호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영장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p> <p>제218조 (영장 없는 압수)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이 남겨 놓은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p> <p>제219조 (따름규정) 제106조·제107조·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제114조·제115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5조까지·제140조·제141조·제333조 제2항·제486조의 규정은 검사</p>
--	--

<p>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중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2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p>	<p>또는 사법경찰관이 이 장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중규정에 따른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2조부터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p>
<p>제220조 (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p>	<p>제220조 (긴급처분) 제216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제123조 제2항·제125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p>
<p>제221조 (제삼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p>	<p>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의뢰할 수 있다.</p>
<p>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⑤판사는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⑥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221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사람이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있다. ⑤판사는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른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⑥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한 경우에는 즉시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p>
<p>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p>	<p>제221조의3 (감정의 의뢰와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따라 감</p>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p> <p>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p>	<p>정을 의뢰하는 경우 제172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p> <p>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따른다.</p>
<p>제221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p> <p>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p> <p>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p>	<p>제221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p> <p>①제2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을 의뢰 받은 사람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p> <p>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④제173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 규정에 따른다.</p>
<p>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p> <p>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p>	<p>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시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p> <p>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p>
<p>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p>	<p>제223조 (고소권자)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p>
<p>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p>	<p>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p>
<p>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p> <p>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p>	<p>제225조 (피해자가 아닌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p> <p>②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p>
<p>제226조 (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p>	<p>제226조 (앞과 같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p>

<p>고소할 수 있다.</p> <p>제227조 (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p> <p>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p> <p>제230조 (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형법 제291조의 죄로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다.</p> <p>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p> <p>제232조 (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p> <p>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p>	<p>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p> <p>제227조 (앞과 같음)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p> <p>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안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p> <p>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p> <p>제230조 (고소기간) ①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시작한다. ②형법 제291조의 죄로 약취·유인된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이 진행된다.</p> <p>제231조 (여러 명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게을리 하여 고소기간을 넘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p> <p>제232조 (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p> <p>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p>
--	---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5조 (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제235조 (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규정에 따른다.
제236조 (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236조 (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7조 (고소·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말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239조 (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39조 (따름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규정에 따른다.
제240조 (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40조 (자수와 따름규정) 제237조와 제238조는 자수규정에 따른다.
제241조 (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1조 (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성명·연령·본적·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및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

<p>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p>	<p>자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야 하며 잘못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잘못된 기록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결침도장을 찍은 후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p>
<p>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p>	<p>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p>
<p>제 2 장 공 소</p>	<p>제 2 장 공 소</p>
<p>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p>	<p>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p>
<p>제247조 (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①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p>	<p>제247조 (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①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체 범죄사실에 미친다.</p>
<p>제248조 (공소효력의 인적범위)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p>	<p>제248조 (공소효력의 인적범위)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p>
<p>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p>	<p>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p>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p> <p>제250조 (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p> <p>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p> <p>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 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p>	<p>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p> <p>제250조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 가운데 하나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에 따라 제249조를 적용한다.</p> <p>제251조 (형의 가중·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않은 형에 따라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252조 (시효의 시작점) ①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은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의 계산을 시작한다.</p> <p>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②공범 가운데 한 명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p> <p>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분(副本)을 붙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 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p>
--	--

<p>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p>	<p>④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⑤여러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적을 수 있다.</p>
<p>제255조 (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p>	<p>제255조 (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p>
<p>제256조 (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p>	<p>제256조 (다른 관할로의 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p>
<p>제256조의2 (군검찰관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p>	<p>제256조의2 (군검찰관에 대한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군사법원 검찰부 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 전에 수행한 소송행위는 송치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p>
<p>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257조 (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제기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58조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의 알림)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②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p>
<p>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p>	<p>제259조 (고소인 등에 대한 공소불제기 이유 알림)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p>

<p>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p> <p>제260조 (재정신청) ①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신청은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p> <p>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①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이내에 소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 <p>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수리한 고등검찰청검사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첨부하여 소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기록을 소할고등법원에 송치한다. <p>제262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①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20일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p>	<p>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안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제260조 (재정신청) ①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옳고 그름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신청은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알림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거쳐야 한다.</p> <p>제261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①재정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붙여 7일 안에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한다. <p>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받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붙여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관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30일 안에 그 기록을 관할고등법원에 송치한다. <p>제262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①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받은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20일 안에 다음의 구별에 따라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p>
---	---

<p>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p> <p>2.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p> <p>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전항제1호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p> <p>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와 소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④사건을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⑤제1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기록에 재정결정의 재판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송치하여야 한다.</p> <p>제262조의2 (공소시효의 정지)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p> <p>제263조 (공소제기의 의제) 제262조제1항 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p> <p>제26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p> <p>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p> <p>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제265조 (공소의 유지와 지정번호사) ①법원은 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그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p>	<p>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p> <p>2.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리·재판에 부친다.</p> <p>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제1항 제1호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p> <p>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p> <p>④사건을 지방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부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에 적힌 사항을 적어야 한다.</p> <p>⑤제1항 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에 재정결정의 재판서 정본을 붙여 7일 안에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송치하여야 한다.</p> <p>제262조의2 (공소시효의 정지) 제260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62조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p> <p>제263조 (공소제기의 간주)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p> <p>제264조 (대리인의 신청과 공동신청권자 한 명의 신청의 효력, 신청의 취소)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한 명의 신청은 모두를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p> <p>②재정신청은 제262조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p> <p>③제2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p> <p>제265조 (공소의 유지와 지정번호사) ① 법원은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이 그 법원의 심리·재판에 부쳐진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사람을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p>
--	--

<p>②전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는 당해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단,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재판장이 인정한 사항에 한한다.</p> <p>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p> <p>④법원은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p> <p>⑤지정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법률로써 정한 액의 보수를 받는다.</p>	<p>②제1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단,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재판장이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p> <p>④법원은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p> <p>⑤지정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법률로 정한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p>
<p>제 3 장 공 판</p>	<p>제 3 장 공 판</p>
<p>제 1 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p>	<p>제 1 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p>
<p>제266조 (공소장부분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p>	<p>제266조 (공소장부분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장의 부분(副本)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p>
<p>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변호인과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p>	<p>제268조 (출석요구서 송달의 간주)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린 경우에는 출석요구서 송달의 효력이 있다.</p>
<p>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p>	<p>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출석요구서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 없는 경우에는 제1항</p>

<p>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p> <p>제271조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p> <p>제273조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기일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부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p> <p>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p> <p>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①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가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검사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대등하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에 좌석한다.</p> <p>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p>	<p>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p> <p>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않는다.</p> <p>제271조 (불출석 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출석요구서 또는 알림문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72조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관공서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보관하는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p> <p>제273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①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감정 또는 번역을 명령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p> <p>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p> <p>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①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가 출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검사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같은 구조로 하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면에 앉는다.</p> <p>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p>
--	--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추정된다.</p> <p>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p> <p>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액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p> <p>제277조의2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p> <p>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p> <p>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p>	<p>추정된다.</p> <p>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p> <p>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p> <p>제277조의2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알림을 두 번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출석하지 않아도 개정할 수 있다.</p> <p>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p> <p>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단,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것을 명령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법정에서 나가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나가는 것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p>
--	--

<p>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282조 (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283조 (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p> <p>제284조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입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p> <p>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제286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p> <p>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287조 (피고인신문의 방식) ①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p> <p>제288조 삭제</p>	<p>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282조 (필요적 변호) 제33조 제1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283조 (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p> <p>제284조 (인적사항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연령·본적·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입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p> <p>제285조 (검사의 첫머리 진술)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적힌 대로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제286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만을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리·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p> <p>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286조의2 결정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뢰할 수 없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리·재판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287조 (피고인신문의 방식) ①검사와 변호인은 차례대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 및 필요한 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p> <p>제288조 삭제</p>
--	--

<p>제289조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p>	<p>제289조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각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p>
<p>제290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p>	<p>제290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중에도 할 수 있다.</p>
<p>제291조 (동전) 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p>	<p>제291조 (앞과 같음) 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제27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거나 보내진 서류는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 또는 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제1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p>
<p>제292조 (증거조사의 방식) ①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p>	<p>제292조 (증거조사의 방식) ①재판장은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경우에는 그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②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증거가 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읽게 할 수 있다.</p>
<p>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p>	<p>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제294조 (당사자 증거신청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권)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294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p>	<p>제294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그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p>

<p>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p> <p>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p> <p>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①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p> <p>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p>	<p>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신청인의 진술로 말미암아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p> <p>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p> <p>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p> <p>제296조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①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297조 (피고인 등의 퇴정) ①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법정안에 있는 어떤 사람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를 법정에서 나가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법정에서 나가게 한 경우에 증인·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끝난 경우에는 법정에서 나간 피고인을 다시 들어오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알리게 하여야 한다.</p> <p>제2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제290조부터 제293조까지·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p>
--	--

<p>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p> <p>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p> <p>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p> <p>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p> <p>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01조의2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p>	<p>않으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p> <p>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적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p> <p>②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따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으로 피고인이 불이익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p> <p>제299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p> <p>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p> <p>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이 열린 후 판사가 바뀐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01조의2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다시 시</p>
---	--

<p>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작하여야 한다. 단,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302조 (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p>	<p>제302조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적힌 사항에 따라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303조 (피고인의 마지막 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마지막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305조 (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p>	<p>제305조 (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끝맺은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다.</p>
<p>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p>	<p>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p>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⑤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증 거</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증 거</p>
<p>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p>	<p>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p>
<p>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p>	<p>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p>
<p>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p>	<p>제309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p>
<p>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p>	<p>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p>
<p>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p>	<p>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적은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p>
<p>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p>	<p>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적은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도 이와 같다.</p>
<p>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p>	<p>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적은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증거로</p>

<p>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제313조 (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p> <p>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p> <p>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계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p> <p>1.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p>	<p>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p> <p>제313조 (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적은 서류로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감정의 과정과 결과를 적은 서류도 제1항과 같다.</p> <p>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서 등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조서 또는 서류는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p> <p>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규정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p> <p>1. 호적의 등본(謄本) 또는 초본(抄本)·공정증서등본 등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p>
--	---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작성한 문서</p> <p>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p> <p>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p> <p>제316조 (전문의 진술) ①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p> <p>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p> <p>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p> <p>③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p> <p>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2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p>	<p>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p> <p>2. 상업장부·항해일지 등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p> <p>3. 그 밖에 특히 신뢰할만한 상황에서 작성된 문서</p> <p>제316조 (전문의 진술) ①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 아래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 아래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p> <p>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p> <p>②제1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p> <p>③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것인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1항과 제2항의 예에 따른다.</p> <p>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피고인이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아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으면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p>
---	--

<p>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p> <p>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증거로 할 수 있다.</p> <p>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부터 제314조까지 및 제316조의 규정에 따른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본다. 단,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공판의 재판</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공판의 재판</p>
<p>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p>	<p>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의 심리·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p>
<p>제320조 (토지관할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전에 하여야 한다.</p>	<p>제320조 (토지관할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p>
<p>제321조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전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p>	<p>제321조 (형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이외에는 판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판결 전 구금의 포함일수·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p>
<p>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p>	<p>제322조 (형 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p>
<p>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제323조 (유죄판결에 밝혀져야 할 이유) ①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범죄가 될 사실·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밝혀야 한다.</p>

<p>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제324조 (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p> <p>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p> <p>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확정판결이 있을 때 2. 사면이 있을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p>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p>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 	<p>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밝혀야 한다.</p> <p>제324조 (상소에 대한 알림)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알려야 한다.</p> <p>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p> <p>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사면이 있는 경우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범죄 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p>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4. 제3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 6.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p>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소가 취소된 경우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할 수 없는 경우 4.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
--	---

<p>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제330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p> <p>제331조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p> <p>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p> <p>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p>	<p>지 않는 경우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제330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법정에서 나가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p> <p>제331조 (무죄 등의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면소·형의 면제·형의 선고유예·형의 집행유예·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p> <p>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p> <p>제333조 (압수장물의 반환)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장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판결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임시로 돌려준 장물에 대하여 특별한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돌려준다는 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p>제334조 (재산형의 임시납부판결) ①법원은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낼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	---

<p>②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p> <p>③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p> <p>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③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④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p> <p>제336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①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p> <p>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편 상 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통 칙</p> <p>제338조 (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p> <p>②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p>	<p>②제1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p> <p>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마지막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④제2항과 제3항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따른다.</p> <p>제336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①형법 제36조·제39조 제4항·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323조에 따라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p> <p>②제335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따른다.</p> <p>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신청에 따른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p> <p>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편 상 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통 칙</p> <p>제338조 (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p> <p>②제2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p>
---	--

<p>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1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와 당해 다른 사건의 검사는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p>	<p>법원의 심리·재판에 부쳐진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하여 심리·재판되어 한 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와 해당 다른 사건의 검사는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상소할 수 있다.</p>
<p>제339조 (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p>	<p>제339조 (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p>
<p>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p>	<p>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p>
<p>제341조 (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가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p>	<p>제341조 (앞과 같음) ①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p>
<p>제342조 (일부상소) 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p>	<p>제342조 (일부상소) 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p>
<p>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p>	<p>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알린 날부터 진행된다.</p>
<p>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p>	<p>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례) ①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p>
<p>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p>	<p>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의 제</p>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p>제346조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p> <p>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348조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p> <p>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p> <p>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p>	<p>기기간 안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p>제346조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이 된 사유를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사람은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p> <p>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를 허락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348조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제347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한한다.</p> <p>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사람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p> <p>제350조 (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사람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p>
--	---

<p>제352조 (상소포기등의 방식)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제353조 (상소포기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p> <p>제354조 (상소포기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p> <p>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제356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52조 (상소포기 등의 방식)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②말로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p> <p>제353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보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할 수 있다.</p> <p>제354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사람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p> <p>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례)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따른다.</p> <p>제356조 (상소포기 등과 상대방의 알림) 상소·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p>
<p>제 2 장 항 소</p>	<p>제 2 장 항 소</p>
<p>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p> <p>제358조 (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p> <p>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p>	<p>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p> <p>제358조 (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p> <p>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p>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나 항소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p> <p>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p> <p>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p> <p>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p>	<p>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보내야 한다.</p> <p>제361조의2 (소송기록의 접수와 알림) ①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②제1항의 알림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제1항의 알림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p> <p>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제361조의 알림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부분(副本) 또는 등본(謄本)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③상대방은 제2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답변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그 부분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p>
---	---

<p>할 수 있다.</p> <p>제361조의5 (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 제 6. 삭 제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 제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p>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 ①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①제3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p>	<p>를 할 수 있다.</p> <p>제361조의5 (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삭 제 6. 삭 제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 관여한 경우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경우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삭 제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12. 삭 제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p>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 ①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①제3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364조 (항소법원의 심리와 재판) ①항소</p>
---	--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p> <p>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p> <p>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p> <p>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p> <p>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p>	<p>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리·재판하여야 한다.</p> <p>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p> <p>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④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p> <p>⑤항소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항소장·항소이유서 등의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p> <p>⑥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p>
<p>제364조의2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p>	<p>제364조의2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p>
<p>제365조 (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p> <p>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p>	<p>제365조 (피고인의 법정 출석)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p> <p>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p>
<p>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p>	<p>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p>
<p>제367조 (관할법원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p>	<p>제367조 (관할법원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1심으로 심리·재판하여야 한다.</p>
<p>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p>	<p>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p>

<p>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p> <p>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p> <p>제370조 (준용규정) 제2편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p>	<p>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p> <p>제369조 (재판서를 적는 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적어야 하며 원심판결에 적은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p> <p>제370조 (따름규정)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리·재판규정에 따른다.</p>
<p>제 3 장 상 고</p>	<p>제 3 장 상 고</p>
<p>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p> <p>제372조 (비약적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판결이 있는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p>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p> <p>제372조 (비약적 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2. 원심판결이 있는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p>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74조 (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p>	<p>제374조 (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p>
<p>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p>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p>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p>	<p>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p>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p> <p>제378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p> <p>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81조 (동전)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p> <p>제382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p> <p>제383조 (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p>	<p>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보내야 한다.</p> <p>제378조 (소송기록의 접수와 알림) 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알림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378조의 알림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즉시 그 부분(副本) 또는 등본(謄本)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답변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즉시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제37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81조 (앞과 같음)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p> <p>제382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p> <p>제383조 (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p>
---	--

<p>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p>제384조 (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p> <p>제385조 삭 제</p> <p>제386조 (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p> <p>제387조 (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p> <p>제388조 (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p> <p>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등) ①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단, 제2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적법한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p> <p>제389조의2 (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p> <p>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p>	<p>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5.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p>제384조 (심리와 재판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대하여 심리·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p> <p>제385조 삭 제</p> <p>제386조 (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p> <p>제387조 (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p> <p>제388조 (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p> <p>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 등) 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단, 제2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적법한 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389조의2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필요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p> <p>제390조 (서면심리에 따른 판결)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 등의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p>
--	--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p>	<p>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p>
<p>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p>	<p>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p>
<p>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p>	<p>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p>
<p>제394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p>	<p>제394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p>
<p>제395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p>	<p>제395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p>
<p>제396조 (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p>	<p>제396조 (파기와 직접판결)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②제368조의 규정은 제1항의 판결에 따른다.</p>
<p>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p>	<p>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제393조부터 제396조까지의 경우 이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p>
<p>제398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398조 (재판서를 적는 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적어야 한다.</p>
<p>제399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p>	<p>제399조 (따름규정) 제2장은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리·재판규</p>

<p>준용한다.</p> <p>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①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제401조 (정정의 판결) ①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p>	<p>정에 따른다.</p> <p>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①상고법원은 판결의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제401조 (정정의 판결) ①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p>
<p>제 4 장 항 고</p>	<p>제 4 장 항 고</p>
<p>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403조 (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p> <p>②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03조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은 구금·보석·압수나 압수물의 반환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않는다.</p>
<p>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이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p>	<p>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p>
<p>제406조 (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06조 (항고의 절차)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07조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p>	<p>제407조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p>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나 항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 결정) ①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p>	<p>제408조 (원심법원의 변경 결정) ①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p>
<p>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p>	<p>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이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p>
<p>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p>	<p>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안과 그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p>
<p>제411조 (소송기록등의 송부) ①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11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p>
<p>제412조 (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항고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412조 (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항고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p>	<p>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p>
<p>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p>	<p>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p>

<p>②항고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재판을 하여야 한다.</p>	<p>②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재판을 하여야 한다.</p>
<p>제415조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415조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416조 (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p>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p>	<p>제416조 (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알린 경우에 이에 불복하는 경우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보석·압수 또는 압수물 반환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령한 재판 4.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령한 재판 <p>②지방법원이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알림이 있는 날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제4호의 재판은 제3항의 청구기간 안과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p>
<p>제417조 (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417조 (앞과 같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반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418조 (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18조 (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19조 (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p>	<p>제419조 (따름규정) 제409조·제413조·제414조·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제417조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따른다.</p>

제 4 편 특별소송절차	제 4 편 특별소송절차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재 심</p> <p>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참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참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p>제421조 (동전) ①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재 심</p> <p>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로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경우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로 거짓인 것이 증명된 경우 3. 무고로 말미암아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으로 변경된 경우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6.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원판결·이전 심급의 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참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참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p>제421조 (앞과 같음) ①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제420조 제1호·제2호·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p>

<p>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는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p> <p>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는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p> <p>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423조 (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p> <p>제424조 (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 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p>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p> <p>제426조 (변호인의 선임) ①검사 이외의 사람이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p> <p>제427조 (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p>	<p>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는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p> <p>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는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p> <p>제422조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로 범죄가 증명된 사실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하는 경우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423조 (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p> <p>제424조 (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 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p>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p> <p>제426조 (변호인의 선임) ①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p> <p>제427조 (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p>
--	--

<p>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p>	<p>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p>
<p>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 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p>	<p>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 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p>
<p>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p>	<p>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례) 제344조는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규정에 따른다.</p>
<p>제431조 (사실조사) ①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p>	<p>제431조 (사실조사) ①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령하거나 다른 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있다.</p>
<p>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p>	<p>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p>
<p>제434조 (동전)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p>	<p>제434조 (앞과 같음)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p>
<p>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p>	<p>제435조 (재심시작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재심시작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시작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p>

<p>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p> <p>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p> <p>제437조 (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제1항, 제435조제1항과 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438조 (재심의 심판) ①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②다음 경우에는 제306조제1항, 제3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 ③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④전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p> <p>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p>	<p>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p> <p>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p> <p>제437조 (즉시항고) 제433조·제434조 제1항·제435조 제1항과 제436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438조 (재심의 심리와 재판) ①재심시작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이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리·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다음 경우에는 제306조 제1항·제3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제1항의 심리와 재판에 적용하지 않는다.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2. 유죄의 선고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정신장애자가 된 경우 ③제2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을 열지 못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p> <p>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p>
---	---

<p>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 소재지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2 장 비상상고</p>	<p>제 2 장 비상상고</p>
<p>제441조 (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p>	<p>제441조 (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리·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p>
<p>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43조 (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p>	<p>제443조 (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따라 진술하여야 한다.</p>
<p>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만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관할·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45조 (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p>	<p>제445조 (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판결로 기각하여야 한다.</p>
<p>제446조 (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p>	<p>제446조 (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p>
<p>제447조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p>	<p>제447조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제446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판결 이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p>

제 3 장 약식절차	제 3 장 약식절차
<p>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제450조 (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p> <p>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p> <p>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p> <p>제455조 (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p>	<p>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 등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제450조 (보통의 심리와 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리·재판하여야 한다.</p> <p>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알림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p> <p>제452조 (약식명령의 알림) 약식명령의 알림은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 한다.</p> <p>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알림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즉시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p> <p>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p> <p>제455조 (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p>

<p>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p> <p>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p> <p>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p> <p>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p> <p>제458조 (준용규정)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p> <p>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리·재판하여야 한다.</p> <p>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p> <p>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되거나,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p> <p>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p> <p>제458조 (따름규정) ①제340조부터 제342조까지·제345조부터 제352조까지·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규정에 따른다.</p> <p>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다.</p>
<p>제 5 편 재판의 집행</p>	<p>제 5 편 재판의 집행</p>
<p>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후에 집행한다.</p> <p>제460조 (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p>	<p>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후에 집행한다.</p> <p>제460조 (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말미암아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p>

<p>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p>	<p>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謄本) 또는 초본(抄本)을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이외에는 재판서의 원본(原本)·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그 서면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도장을 찍어 할 수 있다.</p>
<p>제462조 (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p>	<p>제462조 (형 집행의 순서) 두 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와 몰수 이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을 집행할 수 있다.</p>
<p>제46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p>	<p>제46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p>
<p>제464조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64조 (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사는 즉시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p>	<p>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으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p>
<p>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p>	<p>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령한 경우에는 5일 안에 집행하여야 한다.</p>
<p>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p>	<p>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p>
<p>제468조 (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468조 (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p> <p>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p>	<p>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정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임신중인 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정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p>
<p>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p> <p>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p> <p>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p>	<p>제470조 (자유형 집행의 정지) ①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정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정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넘겨주어 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p> <p>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은 제3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p>
<p>제471조 (동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이상인 때 3. 잉태후 6월이상인 때 4.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p>제471조 (앞과 같음) ①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2. 7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경우 4.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대한 질병이 있거나 또는 신체장애자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6. 직계비속이 어리고 보호할 다른 친

<p>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p> <p>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p> <p>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p> <p>②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p> <p>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①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p> <p>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76조 (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p>	<p>족이 없는 경우 7.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검사가 제1항의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p> <p>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안과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p> <p>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②출석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p> <p>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①제473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거·연령·형명·형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p> <p>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 제473조와 474조에 따른 형집행장의 집행은 제1편 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476조 (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수형자원부에 적고 즉시 그 등본(謄本)을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본적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인 경</p>
--	---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의 장,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477조 (재산형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p> <p>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p> <p>제479조 (합병후 법인에 대한 집행)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p> <p>제480조 (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p> <p>제481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p> <p>제482조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p>	<p>우에는 시·구의 장,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p> <p>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과료·몰수·추징·과태료·소송비용·비용배상 또는 임시납부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집행규정에 따른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p> <p>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전매 등 공과금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p> <p>제479조 (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법인에 대하여 벌금·과료·몰수·추징·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령한 경우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p> <p>제480조 (임시납부 집행의 조정) 제1심 임시납부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 임시납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1심 재판의 집행은 제2심 임시납부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본다.</p> <p>제481조 (임시납부 집행과 본형의 집행) 임시납부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형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p> <p>제482조 (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 등의 포함) 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경우</p>
---	---

<p>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p> <p>④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p>	<p>②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포함하여 계산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p> <p>④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계산한다.</p>
<p>제483조 (물수물의 처분) 물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p>	<p>제483조 (물수물의 처분) 물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p>
<p>제484조 (물수물의 교부) ①물수를 집행한 후 3월이내에 그 물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물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②물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484조 (물수물의 반환) ①물수를 집행한 후 3개월 안에 그 물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물수물을 돌려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돌려주어야 한다.</p> <p>②물수물을 처분한 후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로 취득한 대가를 돌려주어야 한다.</p>
<p>제485조 (위조등의 표시) ①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②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p>	<p>제485조 (위조 등의 표시) ①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②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제1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관공서에 속한 것인 경우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실을 관공서에 알려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p>
<p>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 ①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공고한 후 3월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p> <p>③전항의 기간내에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p>	<p>제486조 (반환불가능과 공고) ①압수물을 돌려받을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압수물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공고한 후 3개월 안에 돌려달라는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p> <p>③제2항의 기간 안에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p>
<p>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p>	<p>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사람이 빈곤</p>

【부 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488조 (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489조 (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490조 (신청의 취하)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p> <p>제491조 (즉시항고) ①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p>	<p>하여 소송비용을 다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안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488조 (재판해석의 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재판의 해석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489조 (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490조 (신청의 취하) ①제487조부터 제489조까지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44조는 제487조부터 제489조까지의 신청과 그 취하규정에 따른다.</p> <p>제491조 (즉시항고) ①제487조부터 제489조까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다 내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 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p>
---	---

《참고》

- 1) 이 조문은 2005.5.3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시행일은 2008.1.1.이다.
- 2) 이 조문은 2005.5.3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시행일은 2008.1.1.이다.

- 3) 이 조문은 2005.5.3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시행일은 2008.1.1.이다.
- 4) 이 조문은 2005.5.3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시행일은 2008.1.1.이다.
- 5) 이 조문은 2005.5.3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시행일은 2008.1.1.이다.
- 6) 이 조문은 2005.5.3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시행일은 2008.1.1.이다.
- 7) 이 조문은 2005.5.3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시행일은 2008.1.1.이다.